

2026

2

Monthly  
Magazine

통 권 267호

2026 - 2

세무회계경영  
저널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 인력

지원사업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 eAnSe.com

30분내  
Q&A답글

☎ 02-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 2026 중소기업 기술개발 · 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 · 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고용노동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와 매출액과세가액 계산방법 ..... 2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원천감액하는 금액 구분 ..... 3
- ✓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시 부가세 신고서 첨부서류 ..... 4

## 이달의 특집

- ✓ 2026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 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5

## 2월의 세무일지

| 일 자       | 구 분                                                                                                                                                         |
|-----------|-------------------------------------------------------------------------------------------------------------------------------------------------------------|
| 2<br>(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br>납기한, 9월말 결산법인<br>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br>부, 개별소비세(유류 등)<br>신고납부<br>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br>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br>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br>소득 지급명세서 제출<br>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10<br>(화) |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분<br>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br>고납부, 개인사업자 사업<br>장 현황신고, 레저세(지방<br>교육세 포함) 신고납부,<br>매출·매입차별계산서 합계<br>표 제출마감일, 특별징수<br>지방소득세 납부<br>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
| 20<br>(금)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br>함) 신고납부                                                                                                                                    |
| 25<br>(수) |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환급                                                                                                                                               |

## 경영정보

- ✓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 · 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중소벤처기업부) ..... 104
-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고용노동부) ..... 120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1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와 매출액과세가액 계산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6/1/7일자 통권 1761호

| 개념구분                     | 과세가액 포함 원인·이유                       | 과세가액 계산법과 세율, 기재방법, 대조                                              |
|--------------------------|-------------------------------------|---------------------------------------------------------------------|
| 세금계산서 발행                 | 재화·용역 공급액 × 10%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자료와 일치 확인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누락, 중복 확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불 국세청 자료와 플랫폼 매출 비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0.1/1.1 = 부가가치세임<br>국세청 매출자료와 결제대행 플랫폼사 매출과 중복누락 비교 |
| 간주임대료 상당액                | 전세금 보증금×연 3.1%×10%                  | 전세금 등×연 3.1%×92일/365일×10%                                           |
| 자가공급                     | 면세사업전용액, 타사업장 반출                    | 해당 재화·용역의 장부가액, 시세 등의 10%                                           |
| 개인적 공급                   | 자가사용 취득재화 등 10%                     | 사용소비액의 미수취, 시가보다 낮은 가액 수취×10%                                       |
| 사업상 증여                   | 자기생산, 취득재화                          | 증여재화 등×10%, 제외① 견본품 ② 광고목적 불특정다수 무상배포, ③ 자기상품 구입자에 대한 증정품           |
| 폐업잔존재화                   |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은 금액                  | 폐업시 잔존금액 × 10%(제외 : 사업종류 변경, 타사업장 이전 등)                             |
| 신탁재산 지위이전                | 위탁자의 지위이전가액                         |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해당 재화용역가액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칸의 해당액×10%                                             |

## ◎ 2026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 ①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9%에서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에서 22%, 3천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법인세율을 각 단계마다 1%씩 인상함(법인 55)
- ②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기부가능 기준소득(=결손차감후 당기손익-전액기부인정액)의 10%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기준소득의 20%에서 30%로 상향함(법인 24)
- ③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상장사로 순이익의 40%이상 배당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각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초과 50억원까지 25%, 50억원 초과 30%)(조특 104의27)
-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대부분 감면·세액공제규정 : 일몰 올해 25년 → 28년으로 3년 자동연장
- 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제작비용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조특법 25조의6)
- 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조특법 25조의8)
- ⑦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손비계상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산입이 가능(조특 제28조의5)
- ⑧ 지역사회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허용(조특 136)
- 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금액을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추가 상향조정함(조특 126의2)
- ⑩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부가세법 60조3항,4항)

## ◎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시 부가세 신고서 첨부서류

- 안세재경저널 2026/1/21일자 통권 1763호

| 영세율적용대상                                                              | 첨부서류                                                                          |                                  |
|----------------------------------------------------------------------|-------------------------------------------------------------------------------|----------------------------------|
|                                                                      | 법령에의한첨부서류                                                                     | 국세청장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수출실적명세서,<br>휴대반출시간이수출신고서사본,<br>소포수출의경우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 수출대행<br>계약서사본과수출실<br>적명세서 |
| 중계무역방식수출,<br>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br>위탁가공무역수출,수입신고수<br>리전보세구역에서 외국반출<br>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br>외화입금증명서<br>(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자로부터<br>매입하여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br>매입계약서 추가첨부) |                                  |

|                                    |                 |                                                                     |                                   |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내국신용장사본이나<br>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br>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br>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관세환급금 등<br>명세서<br>(내국신용장<br>불포함분) |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 장기해외공사의경우<br>최초신고시공사              |
| 수출재화<br>임가공용역                      | 수출업자와<br>직접도급계약 |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br>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내국신용장<br>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사본이나<br>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br>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br>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
| 외항선박·항공기등에<br>공급하는 재화·용역           |                 | 선(기)적완료증명서.                                                         | 외항선박등에제공한<br>재화·용역일람표             |
| 관광알선용역                             |                 | 일반여행업은외화입금증명서                                                       |                                   |
| 외국인전용 판매장 등에서<br>공급하는 재화·용역        |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br>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br>한공급입증서류                                       |                                   |
| 장애인용보장구 및<br>정보통신기기                |                 | 월별판매액합계표                                                            |                                   |
| 농민등에게 공급하는<br>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 월별판매액합계표임협·중앙회의장의<br>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br>농협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br>납품 확인서 |                                   |
| 농·어업기자재 등에대한<br>사후환급               |                 | 환급신청서, 농·어민확인서,<br>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br>(비사업자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br>환급신청명세서    |                                   |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br>사후환급                 |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br>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br>(면세물품판매및환급실적명세서)               |                                   |
|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br>재화또는 용역에 대한<br>사후환급 |                 |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br>세금계산서 원본,<br>위임장(대리인의의한신청시)                    |                                   |



# 2026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1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 1-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  | '26년                |          |
|-----------------------|-------------------|-------|--|---------------------|----------|
| 창업성장<br>기술개발<br>(R&D)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 중소기업기술<br>혁신개발사업  | 수출지향형 |  | 중소기업기술<br>혁신개발사업    | 글로벌선도기술  |
|                       |                   | 시장확대형 |  |                     | 중소기업유망기술 |
|                       |                   | 시장대응형 |  |                     |          |
| 지원규모                  | 신규과제 435개 / 617억원 |       |  | 신규과제 451개 / 1,012억원 |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구분            |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 글로벌선도<br>기술개발 | 수출지향형  | 최대 2년, 10억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br>(품목지정),<br>지정공모 |
|               | 글로벌협력형 | 최대 5년, 25억 이내  | 75% 이내       |                         |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 최대 3년, 100억 이내 | 75% 이내       |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2~5년, 5억~100억원 이내 지원
  - 글로벌선도기술개발(540억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472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신규과제 451개 내외

- ◎ 지원금액 : 신규과제 1,012억원

**신청 · 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1월 ~ 6월
-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6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2~0538, 0541~0548  
(이메일) 311@tipa.or.kr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사업정보-사업공고-마감-‘기술혁신개발사업’ 검색

**Q&A**

Q.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자격 중에서 ‘졸업제’란 무엇인가요?

A. 졸업제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 공고 참조

Q. 협약체결 이후 연구개발비 집행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

## 1-2. 창업성장기술개발(R&D)

###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구조<br>개편 | (디딤돌) 도약 트랙 내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br>(TIPS) 일반, 딥테크, 글로벌 TIPS 지원 |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R&D를 첫걸음 트랙으로 이동 및 도약 트랙 내 전략기술 R&D 신설<br>(TIPS) '딥테크 트랙'을 '일반형 트랙'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 |
| 지원단가<br>상향 |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5억원                                     |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원                                                                          |
| 공고시기       | (디딤돌) 25년 4월                                                | (디딤돌) 25년 12월, 26년 3월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은 10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등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 디딤돌  |     | 최대 1.5년, 2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 TIPS | 일반  | 최대 2년, 5억원   |          |            |
|      | 딥테크 | 최대 3년, 15억원  |          |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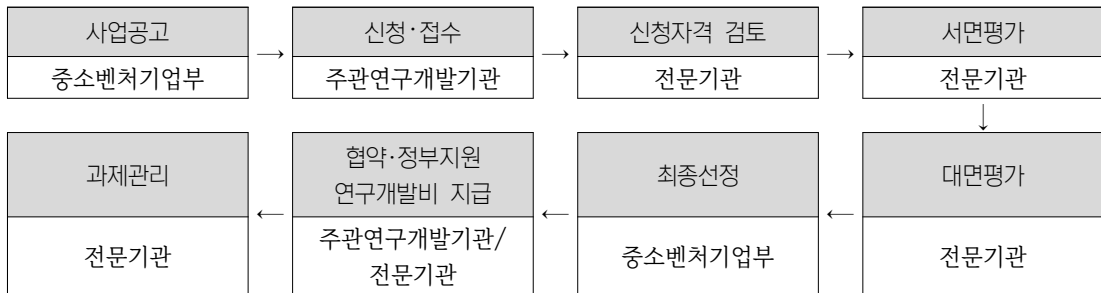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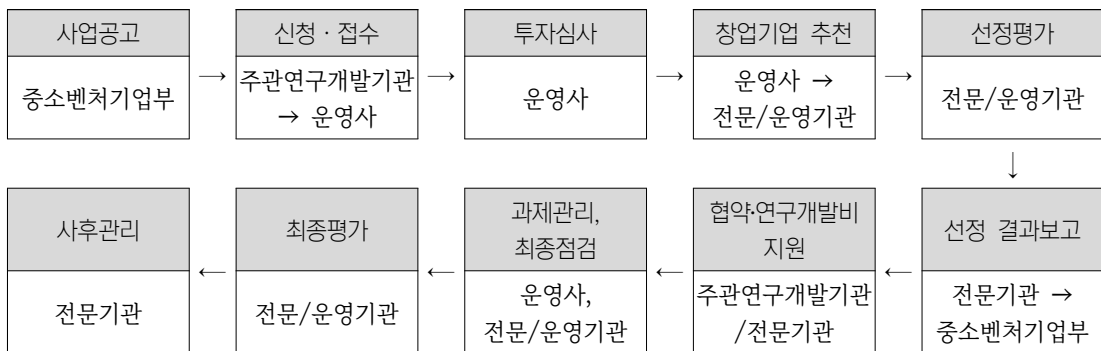
- ◎ 지원 세부내용 :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1.5~3년, 2~15억원 지원
  - 디딤돌(711억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고도화기술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약기술을 단계별로 지원
  - TIPS(1,624억원)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 및 정부자금을 매칭하여 기술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신규 과제 총 1,668개 지원
  - (디딤돌) 868개, (TIPS) 800개
- ◎ 지원금액 : 신규 과제 총 2,335억원  
(디딤돌 : 711억원 , TIPS : 1,624억원)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디딤돌) (1차) '25년 12월, (2차) '26년 3월(TIPS) 상시
-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 추진절차(세부추진절차는 각 공고에서 확인)
- ① 디딤돌



## ② TIPS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신청 창업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사)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VC, 선도·벤처기업 등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 (디딤돌)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3, (이메일) cookie27@korea.kr
-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전화) 044-204-7645, (이메일) psh0912@korea.kr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2, 0558, (이메일) 331@tipa.or.kr
- (TIPS) 스타트업팁스실  
(전화) 02-2280-0461, (이메일) tips@tipa.or.kr

### ◎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1-3.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사업개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 '25년                                                                                                                       |  | '26년                                                                                                                               |      |                     |                      |                                                                                                                                                                                 |  |      |      |                    |         |             |           |
|---------------------|----------------------------------------------------------------------------------------------------------------------------|--|------------------------------------------------------------------------------------------------------------------------------------|------|---------------------|----------------------|---------------------------------------------------------------------------------------------------------------------------------------------------------------------------------|--|------|------|--------------------|---------|-------------|-----------|
| 지원사업                | <table><tr><td>세부사업</td><td>내역사업</td></tr><tr><td>중소기업기술<br/>혁신개발(R&amp;D)</td><td>기술이전사업화<br/>구매연계·상생협력</td></tr></table>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중소기업기술<br>혁신개발(R&D) | 기술이전사업화<br>구매연계·상생협력 | <table><tr><td>세부사업</td><td>내역사업</td></tr><tr><td rowspan="3">민관공동기술사업화<br/>(R&amp;D)</td><td>기술이전사업화</td></tr><tr><td>(신설) TRL점프업</td></tr><tr><td>구매연계·상생협력</td></tr></table>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민관공동기술사업화<br>(R&D) | 기술이전사업화 | (신설) TRL점프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술<br>혁신개발(R&D) | 기술이전사업화<br>구매연계·상생협력                                                                                                       |  |                                                                                                                                    |      |                     |                      |                                                                                                                                                                                 |  |      |      |                    |         |             |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      |                     |                      |                                                                                                                                                                                 |  |      |      |                    |         |             |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br>(R&D)  | 기술이전사업화                                                                                                                    |  |                                                                                                                                    |      |                     |                      |                                                                                                                                                                                 |  |      |      |                    |         |             |           |
|                     | (신설) TRL점프업                                                                                                                |  |                                                                                                                                    |      |                     |                      |                                                                                                                                                                                 |  |      |      |                    |         |             |           |
|                     | 구매연계·상생협력                                                                                                                  |  |                                                                                                                                    |      |                     |                      |                                                                                                                                                                                 |  |      |      |                    |         |             |           |
| 지원조건                |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이내<br>(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br>(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br>(TRL점프업) (1단계) 9개월, 1억원,<br>(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br>(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                     |                      |                                                                                                                                                                                 |  |      |      |                    |         |             |           |
|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                                                                                                           |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단계별(PoC·PoM<br>→ R&D) 지원<br>* '26년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 2단<br>계지원 예정                                         |      |                     |                      |                                                                                                                                                                                 |  |      |      |                    |         |             |           |
| 가점                  | 신설                                                                                                                         |  | (구매연계·상생협력)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우<br>대가점 부여                                                                                                |      |                     |                      |                                                                                                                                                                                 |  |      |      |                    |         |             |           |

#### 지원대상

◎ 신청자격(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      | 지원대상                                                                                                                                                       |
|-----------|------------------------------------------------------------------------------------------------------------------------------------------------------------|
| 기술이전 사업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br>(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필요시)                                     |
| TRL 점프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br>(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br>* 1단계는 필요시, 2단계 과제 선정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 구매연계·상생협력 | (구매연계) 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br>(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 기술이전사업화   | (1단계) 9개월,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TRL점프업    |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              | 지정공모     |
| 구매연계·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 자유, 지정공모 |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6년 1단계 과제만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이전사업화(200억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TRL점프업(100억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

| 기술이전사업화<br>·<br>TRL점프업 | 1단계('26년 지원)        | 2단계('27년 지원)             |
|------------------------|---------------------|--------------------------|
|                        | PoC·PoM<br>9개월, 1억원 | 사업화R&D<br>최대 2년, 10억원 이내 |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 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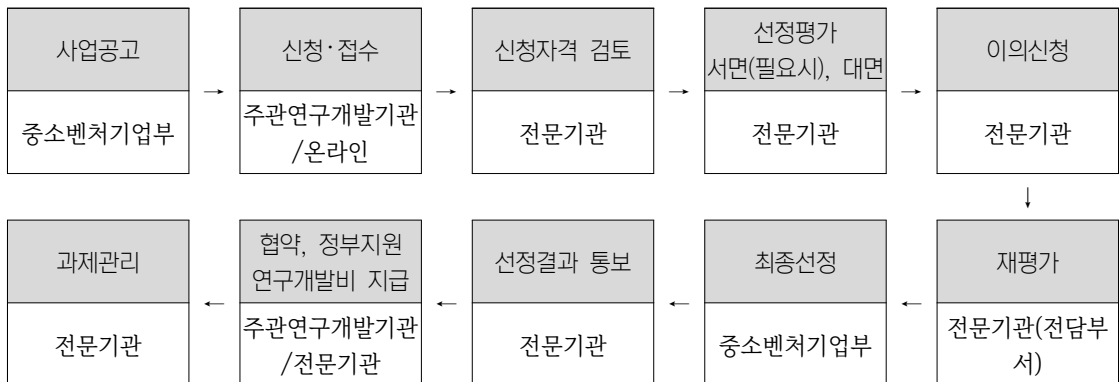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경쟁방식(2:1))·2단계(사업화 R&D)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총 500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603억원(신규)

**신청 · 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1월(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3월(TRL점프업), 5월(구매연계·상생협력)
-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추진절차****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6 (이메일) [cookie27@korea.kr](mailto:cookie27@korea.kr)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5, 0671, 0673, (이메일) [711@tipa.or.kr](mailto:711@tipa.or.kr)
-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1-4.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 사업개요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사와 연계하여 정부 R&D 지원 및 매칭투자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25년   |         |              | '26년       |            |             |              |
|--------|---------|--------------|------------|------------|-------------|--------------|
|        |         |              |            |            |             |              |
| 구분     | 지원기업(개) | 지원규모<br>(최대) | 구분         |            | 지원기업<br>(개) | 지원규모<br>(최대) |
| 스케일업팁스 | 572     | 3년, 15억      | 스케일업<br>팁스 | 일반형        | 681         | 3년, 20억      |
| 글로벌팁스  | -       | -            |            | 특화형        | 100         | 3년, 30억      |
| DCP    | 30      | 3년, 36억      | 글로벌팁스      | 일반형        | 114         | 4년, 50억      |
| 융자`연계형 | 90      | 2년, 5억       |            | 특화형        | 10          | 4년, 60억      |
|        |         |              | DCP        | 기술<br>도전형  | 59          | 3년, 50억      |
|        |         |              |            | 생태계<br>혁신형 | 5           | 4년,<br>200억  |
|        |         |              | 융자연계형      | -          | 90          | 2년, 5억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구 분                  |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 스케일업 팁스              | 일반형    | 최대 3년 20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br>지정공모 |
|                      | 특화형    | 최대 3년 30억 원  |          |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최대 4년 50억 원  |          |               |
|                      | 특화형    | 최대 4년 60억 원  |          |               |
| 딥테크 챌린지<br>프로젝트(DCP) | 기술도전형  | 최대 3년 50억 원  |          |               |
|                      | 생태계혁신형 | 최대 4년 200억 원 |          |               |
| 융자연계형                |        | 최대 2년 5억 원   |          |               |

◎ 우대사항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중 관련 기업 등

※ 가·감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등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 부 내 용                                                                            |
|----------------------|------------------------------------------------------------------------------------|
| 스케일업 팁스              | •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케일업 단계(Series A)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지원                      |
| 글로벌 팁스               | •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R&D 지원                    |
| 딥테크 챌린지<br>프로젝트(DCP) |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 연계방식으로 선정·지원            |
| 융자연계형                | • 기술·기업가치에 기반한 보증(기보)을 통해 은행융자를 유치한 기업에 R&D와 후속 자금확보(용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전주기로 지원 |

◎ 지원규모 : 총 540개 과제, 2,667억 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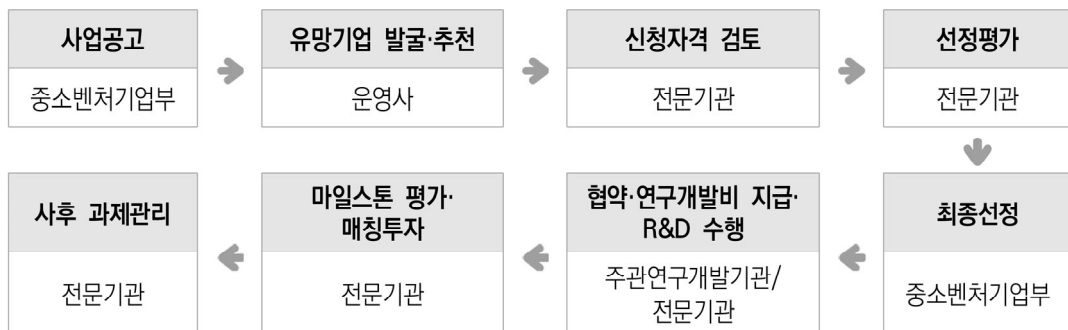
| 구분                |        | 지원기업 수 | 지원규모         |
|-------------------|--------|--------|--------------|
| 스케일업 팁스           | 일반형    | 300    | 최대 3년 20억 원  |
|                   | 특화형    | 100    | 최대 3년 30억 원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90     | 최대 4년 50억 원  |
|                   | 특화형    | 10     | 최대 4년 60억 원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 기술도전형  | 35     | 최대 3년 50억 원  |
|                   | 생태계혁신형 | 5      | 최대 4년 200억 원 |
| 융자연계형             |        | -*     | 최대 2년 5억 원   |

\* '26년 기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신청 · 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상시(2026년 2월 이후)
  -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내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화) 044-204-774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팁스실 : (전화) 02-2280-0420~0429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1-5. 산학연 Collabo R&D****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R&D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예비연구(8개월, 0.5억원 이내)</li> <li>• 컨소시엄형 예비연구(8개월, 2억원 이내)</li> <li>• 일반형 사업화 R&amp;D(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li> </ul> | ※ 사업계획에 따라 예비연구 지원 종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사업화 R&amp;D(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li> <li>• 컨소시엄형 사업화 R&amp;D(최대 24개월, 10.4억원 이내)</li> </ul>                                                                       |
| 가점항목(기타사항) | <b>&lt; 신 설 &gt;</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가점 1점</li> <li>*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가점 1점</li> <li>•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가점 1점</li> </ul>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1단계 연구과제 완료 후 2단계 수행)

| 지원유형                      | 단 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br>연구개발비<br>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일반형(산학협력,<br>산연협력)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원 이내     |                       |      |
| 컨소시엄형(2~4개<br>일반형 과제로 구성)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2억원 이내         |                       | 분야지정 |
|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10.4억원<br>이내 |                       |      |

\* 1단계(예비연구) : '26년부터 예비연구 신규과제 미선정

\*\* 2단계(사업화R&D)는 '25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 세부 과제 유형

| 구분       | 일반형 과제       | 컨소시엄형 과제                    |
|----------|--------------|-----------------------------|
| 과제<br>유형 | 개별과제(1:1 협력) |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
|          |              | 컨소시엄형 과제 A                  |
|          |              |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N     |
|          |              |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
| 분야       | 제한없음         | 공동(대학)    공동(연구소)    공동(대학) |
|          |              |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 ◎ 지원규모 : 394억원(신규 238.5억원)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 (기타사항) 레전드 50+ 선정기업(2점), 산학협력 마일리지(1~2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 체결 기업(1점),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1점), 벤처기업 가점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가점 1점
- ◎ 선정평가 : 신청자격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등
- ◎ 추진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전화) 044-300-0654, 0658, 0675  
(이메일) sch@tipa.or.kr, yjsng@tipa.or.kr, iyeazin@tipa.or.kr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사업공고

### Q&A

- Q.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나요?  
 A.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필수로 제출
- Q.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단계형 사업으로 1단계 예비연구 수행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2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 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서비스) 창출 등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br>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 50% 이내)</li> <li>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 사업비 50% 이내)</li> <li>통합솔루션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억원(총 사업비 50%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 50% 이내)</li> <li>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 사업비 50% 이내)</li> </ul> |
| 신청<br>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servic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li> <li>※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에 따른 온라인 신청 방법 변경</li> </ul>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신청제외 대상**

(1)~(4) 도입기업만 해당, (5)~(8)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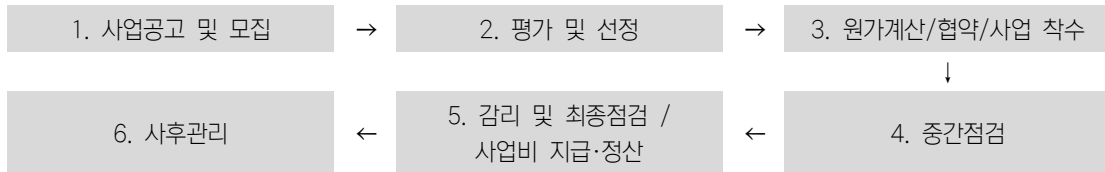
- (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과제 참여 불가(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존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3)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8)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 (신규 구축) BM 창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75억원)
  -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 (고도화) 핵심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 달성 등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25억원)
  - 2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5.3~4월(예정)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세부 공고문 참조)
-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원가계산을 통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최종 협약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추진 의지 및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목표·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파급효과 등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제조회신과  
(전화) 044-204-7272, (이메일) antyx@korea.kr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77, (이메일) smartservice@tipa.or.kr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 공고

### Q&A

- Q.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나요?
- A.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도입기업과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2-2. 혁신제품 지정 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활성화 지원

## &lt;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gt;

| 구분      | '25년                                                                                                                                                                                                    | '26년                                                                                                                                  |
|---------|---------------------------------------------------------------------------------------------------------------------------------------------------------------------------------------------------------|---------------------------------------------------------------------------------------------------------------------------------------|
| 신청자격    |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
| 신청제외 대상 | <p>▶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p> <p>*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p>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p> |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p> |
| 신청접수    |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 구매상담회   | 1회                                                                                                                                                                                                      | 2회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신청 전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
-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 ▶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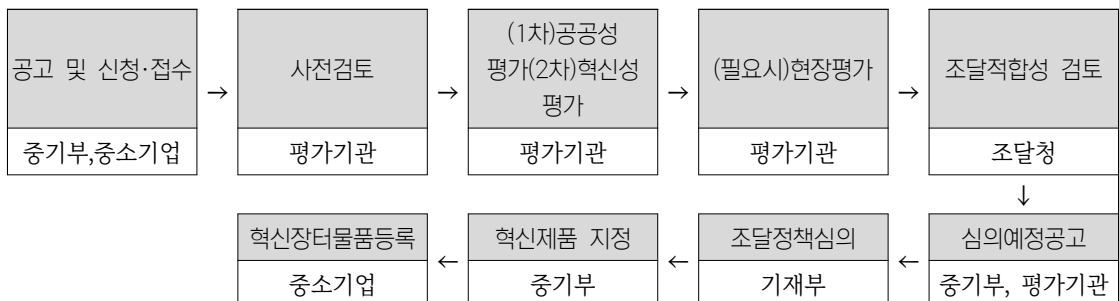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 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매칭 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1월, 7월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 ◎ 평가·심사 주요 내용 : 제품의 공공성,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

## ◎ 선정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7, (이메일) [ziantinha@korea.kr](mailto:ziantinha@korea.kr)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전화) 044-300-0712, 0715, (이메일) [innopro@tipa.or.kr](mailto:innopro@tipa.or.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용어 설명**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

세부품명번호(10자리) : 물품분류번호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번호를 추가(2자리)로 매긴 것

물품식별번호(8자리) : 상기한 물품 분류 내 고유 모델(제품)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2-3.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4년                                                                                                                                                                    | '25년                                                                                                                                                             |
|------------------------------|-------------------------------------------------------------------------------------------------------------------------------------------------------------------------|------------------------------------------------------------------------------------------------------------------------------------------------------------------|
| 지원사업<br>신설 및<br>변경<br>(기반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술수요발굴·매칭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유기업(국내)·기술수요기업(해외) 간 매칭 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진출기업 역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술, 일반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술, 파산기술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li> </ul> </li> </ul> |
|                              |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 (삭제)                                                                                                                                                             |
|                              |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 (삭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인 중소기업 · 기술보유기관 ·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 ◎ 지원조건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신청제외 대상

- ▶ 기업 부도
-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해외진출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기술거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
|-----------------|----------------------------------------------------------------------|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10건) |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150건 내외)                      |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3월
- ◎ 신청방법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접수, 이메일 등
- ◎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 ◎ 선정평가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 심사 · 평가 주요 내용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전화) 051-606-7640, (이메일) infra@kibo.or.kr
- ◎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참조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소통과 공유 > 공지사항 > 공지사항

**3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3-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개요**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기간 | (고도화) 최대 9개월,<br>(동일수준) 최대 6개월   | 최대 9개월                               |
| 지원한도 | (고도화) 최대 2억원,<br>(동일수준) 최대 0.5억원 | 최대 2억원 이내<br>(단, 목표수준별 2회, 2.5억원 한도)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조건                                              |
|-----------|---------------------------------------------------|
| 고도화       | 기업당 최대 2억원(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사업별 상이) |
| 고도화(동일수준) |                                                   |

◎ 우대사항 : 지원 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유형            | 지원내용                                                                                               |
|---------------|----------------------------------------------------------------------------------------------------|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 고도화<br>(동일수준) |                                                                                                    |

◎ 지원규모

| 사 업 명                                       |             | 지원 과제 수 | 지원 기간(개월) | 지원 한도(억원) | 지원비율(%) |
|---------------------------------------------|-------------|---------|-----------|-----------|---------|
| ICT융합<br>스마트<br>공장<br>보급확산<br>(선도형<br>제조혁신) | 정부형         | 265     | 9         | 2         | 50      |
|                                             | 부처협업형       | 150     | 9         | 2         | 50      |
|                                             | 지역특화형       | 미정      | 9         | 2         | 50      |
|                                             | 레전드50+      | 50      | 9         | 5         | 50      |
|                                             | 도약(Jump-Up) | 10      | 9         | 5         | 50      |
|                                             | 제조AI특화      | 400     | 9         | 2         | 50      |
|                                             | 대중소상생형      | 250     | 9         | 1.2       | 30      |
|                                             | 상생형AI트랙     | 20      | 9         | 5         | 50      |
|                                             | R&D성과확산     | 20      | 12        | 5         | 50      |

◎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 · 접수**

- ◎ 공고시기 : '25. 11월 ~ / (세부사업별 상이)
-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 심사 · 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 · 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 추진절차 (세부사업별 상이)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7, (이메일) ljh0129@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 통합공고 : (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25.10.31.)
- ◎ 개발사업 : (제2025-587호)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공고('25.11.12.)  
- (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 3-2.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 사업개요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컨소시엄,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 구분                         |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
| 개별 스마트공장 +<br>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br>*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                            | 고도화<br>(동일수준) |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br>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0.5억원     |

- ◎ 우대사항 :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부여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
| 1  | 수준확인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수준 확인서<br>(발급일로부터 3년내) |
| 2  | 스마트공장<br>솔루션 가동률<br>우수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br>가동률 확인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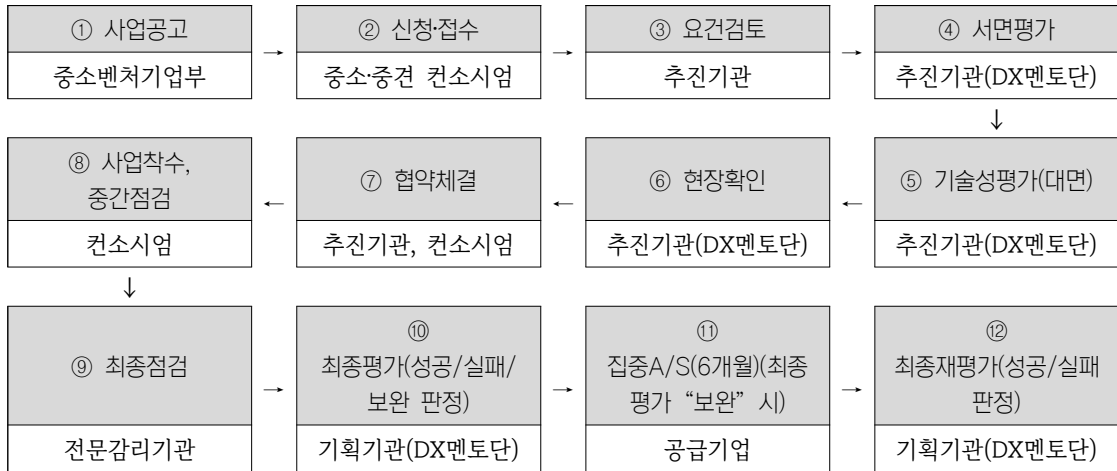
- ◎ 지원 세부내용 :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가·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60억원(정부안)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4. 10. 7.(월) ~ '25. 1. 6.(월), 17시까지
- ◎ 공 고 명 : 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추진절차



### 문의처

-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공고명 : (제2025-593호) 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25.11.24.)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 Q&A

- Q.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 A.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Q. 사업 신청시 조건사항이 있나요?
- A.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5개이상 참여하고, 공급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도입기업 :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기획기관 : 디지털협업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 및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컨소시엄 : “디지털협업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협업단
-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A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3-3. 자율형공장 구축지원****사업개요**

- ◎ (자율형공장)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 구분         | '25년                                                                                                                                | '26년                                                                                                                                                           |
|------------|-------------------------------------------------------------------------------------------------------------------------------------|----------------------------------------------------------------------------------------------------------------------------------------------------------------|
| 기획기관<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AI-DT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 보유</li> <li>• (인력) AI-DT 관련 컨설팅 경험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 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보유</li> <li>• (인력) AI-DT 관련 컨설팅·기업지원, 과제 관리·운영 상근 컨설턴트 5명 이상 보유</li> </ul> |
| 기획기관<br>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통과 기관에 대해 기획기관 Pool 구성 및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검토 및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기획기관 선정 및 기획기관 Pool 구성</li> <li>* 지역TP 기본 지정</li> </ul>                                             |
| 기획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기획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지원 후 최종선정에 따른 협업체결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차등 지급</li> </ul>                                                             |
| 성능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혁신지표) 6개 중 2개 이상</li> <li>• (자율형지표) AI-DT 반영 1개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혁신지표) 8개 중 2개 이상</li> <li>• (자율형지표) AI-DT 반영 2개 이상</li> </ul>                                                      |

**지원대상**

- ◎ (자율형공장)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의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거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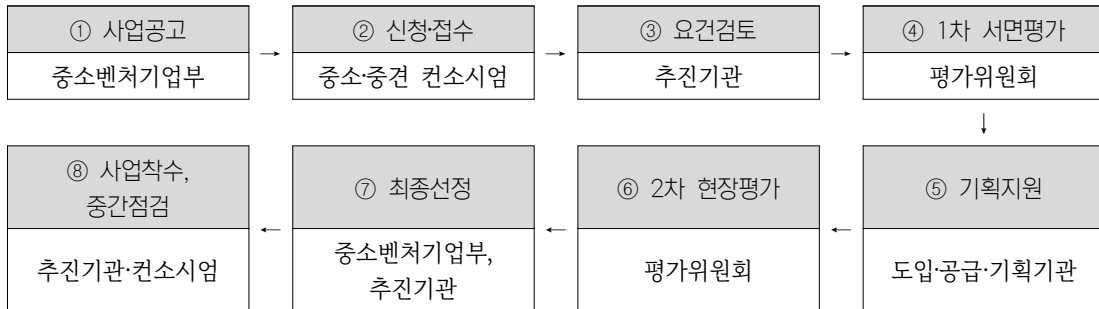
- ◎ (자율형공장) : 총 사업비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지원)

| 구분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
| 자율형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li> <li>* AI(인공지능), DT(디지털트윈), AAS(제조데이터표준) 적용 필수</li> </ul> | 6억원(2년)   |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5년 12월 8일 ~ '26년 1월 7일 17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자율형공장)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959, (이메일) sanga0315@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공고명 : (제2025-601호)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5.11.24일)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 3-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입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우대사항 (각 2점, 최대 6점)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
| 1  | 부리기업              | •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2와 관련하여 부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2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 3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
| 4  | 국내복귀기업            |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
| 5  | 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
| 6  | 지능형 공정모델 활용       | • 既 개발된 첨단로봇 활용 지능형 공정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
| 7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입주기업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내용              | 상세내용                                                                                                                                                                                                                                                                                                                                                                 |
|-------------------|----------------------------------------------------------------------------------------------------------------------------------------------------------------------------------------------------------------------------------------------------------------------------------------------------------------------------------------------------------------------|
| 로봇자동화시스템<br>설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공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li> <li>- 일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li> <li>② 현재 제조공정에 활용 중인 로봇이 노후(내용연수 10년 이상)화 되어 신규로봇으로 교체하는 경우</li> </ol> </li> <li>- AI 기술 활용 :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li> </ul> |
| 로봇 엔지니어링<br>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li> </ul>                                                                                                                                                                                                                                                                                     |
| 로봇안전 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li> </ul>                                                                                                                                                                                                                                                                             |

◎ 지원규모 : 18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450억원(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년 12월 ~ '2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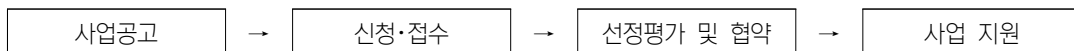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로봇 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 우대가점 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사업비 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전화) 053-210-9622~7 (이메일) (factory@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참고사항

### ① 2026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공고

- (경로)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 참고

### Q&A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 관련 기업이라면 중소·중견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은 하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내 타사업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붙임 1(동시선정 / 신청제한) 참고

Q. 'AI 기술활용' 유형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A. 'AI 기술활용' 유형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등의 제조혁신이 가능한 로봇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Q. '일반' 유형과 'AI 기술활용' 유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일반' 유형과 선정절차는 동일하나, '일반' 유형에서 인정되는 6개 사업비 비목 외 'AI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추가적으로 인정되고 개발비 검증을 위해 'AI SW 개발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Q. AI소프트웨어는 공급기업이 직접 개발해야 하나요?

A.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되나, SW개발을 위한 투입 인력별 세부과업, 투입기간 등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Q. AI기술활용을 통해 구축된 로봇시스템의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사업결과물은 '일반' 유형과 동일하게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변경·이전을 포함해 중도처분이 불가합니다.

#### 용어 설명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 (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도입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보유기업

### 3-5. 2026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핵심 공정과 노동 부하가 높은 수작업 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제조 기업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입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제조현장 공정효율화 및 자동화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 우대사항

| 항 목              | 세부내용                                                                                             |
|------------------|--------------------------------------------------------------------------------------------------|
| 뿌리기업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17조의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 국내복귀기업           |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
|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기업  |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기업                                     |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되는 경우
- ▶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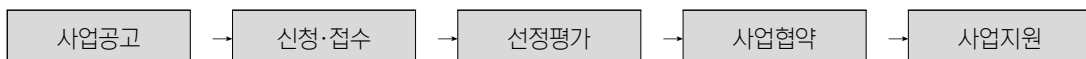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핵심공정과 노동부하가 높은 수작업 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또는 기존설비 업그레이드 지원
  -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 지원규모 : 127개사 내외
- ◎ 지원금액 : 120억원(기업당 최대 95백만원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5년 12월 ~ '26년 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kpic.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심사 → 대면(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사업비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기업의 공정자동화 구축계획에 대한 설비 적정성, 사업 추진 및 계획의 구체성,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 추진절차



\* 추진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문의처**

- ◎ 추진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전화) 02-2183-1623~5, (이메일) ppurisc@kitech.re.kr
- ◎ 사업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PMS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kpic.re.kr)

**참고사항**

- ① 2026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6년 자동화공정 구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신청 홈페이지 '공정자동화 > 사업소개 > 공고'

**Q&A**

- Q.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중견기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 A. 본 사업은 제조기반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공정 및 라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도입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국내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 제공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전화) 044-300-0955, 0960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mailto: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① 2026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6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 3-7. 공급기업 역량진단

###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br>내용 | 기본진단 / 심화진단 | 기본-심화진단 통합<br>제조AI 역량진단 시행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 지원조건 : 역량진단비용 80%

| 구분   | 기본역량진단      | 심화역량진단 |
|------|-------------|--------|
| 지원조건 | 진단비용 80% 지원 |        |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확정 후, 6개월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지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진단원이 역량을 진단하고, 분야별 개선방향 컨설팅 제공
- (AI 역량진단) 역량진단 참여기업의 제조AI 솔루션 개발역량평가 및 등급 산정을 통해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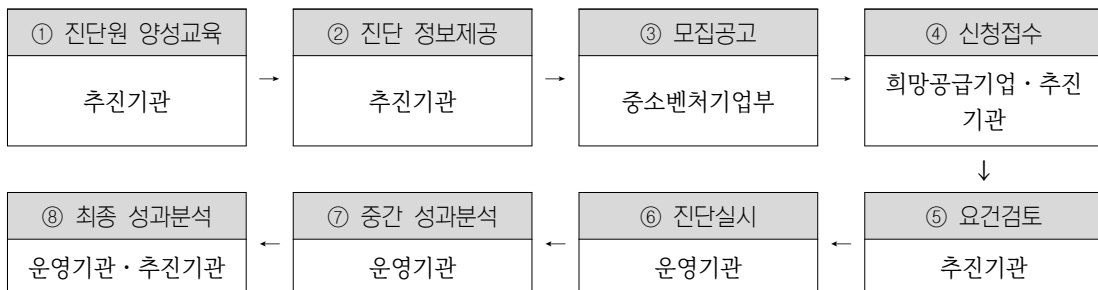
◎ 지원규모 : 공급기업 775개

◎ 지원금액 : 8억원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예정
-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역량

◎ 추진절차



\* 관련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 참고사항 :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선정평가 항목에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반영 예정

###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전화) 044-300-0972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2025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 3-8.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사업 개편 | 3개 내역사업<br>(사전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 | 4개 내역사업<br>(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 |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외'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 비중 | 지원 규모 |
|------|----------------------------------------------------------------------------|-------|-------|
| 사전기획 | 스마트공장 구축을 포함한 제조DX 전략 수립,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85%   | 500개사 |
| AX기획 |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및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 200개사 |

|      |                                                                       |                      |       |
|------|-----------------------------------------------------------------------|----------------------|-------|
| 구축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등 |                      | 400개사 |
| 사후관리 | 부품수리·교체, H/W·S/W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등                     | 50%<br>(최대<br>19백만원) | 210개사 |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년 2월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61, (이메일) [keun7100@tipa.or.kr](mailto:keun7100@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2026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지역별 세부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 3-9.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솔루션 전환 및 종합솔루션 개발·출시

####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사업분야 명칭 변경 | (클라우드화)<br>(종합솔루션화) | (단독형 클라우드화)<br>(통합형 클라우드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지원내용**

| 사업분야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과제당<br>지원규모 |
|--------------|-------------------------------------------------------------------------------------|------|-------------|
| 단독형<br>클라우드화 |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개발 지원(SW → SaaS 전환) | 7    | 2.5억원 이내    |
| 통합형<br>클라우드화 |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 1    | 8억원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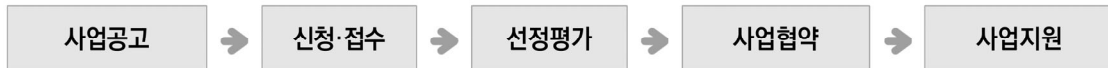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6년 1월 5일 ~ '26년 2월 13일 17시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45, (이메일) hmj@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 '26년도 사업공고 : (제2025-640호) 2026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 3-10.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4년                                 | '25년                                                        |
|------|--------------------------------------|-------------------------------------------------------------|
| 우대사항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br>제조데이터 표준 (5)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br>(신설)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 (3)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우대사항 : 아래항목 해당 시 선정평가 가점 반영(최대 6점\*까지 인정)
  -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점),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모집) 완료 기업(3점)
  - ※ 우대사항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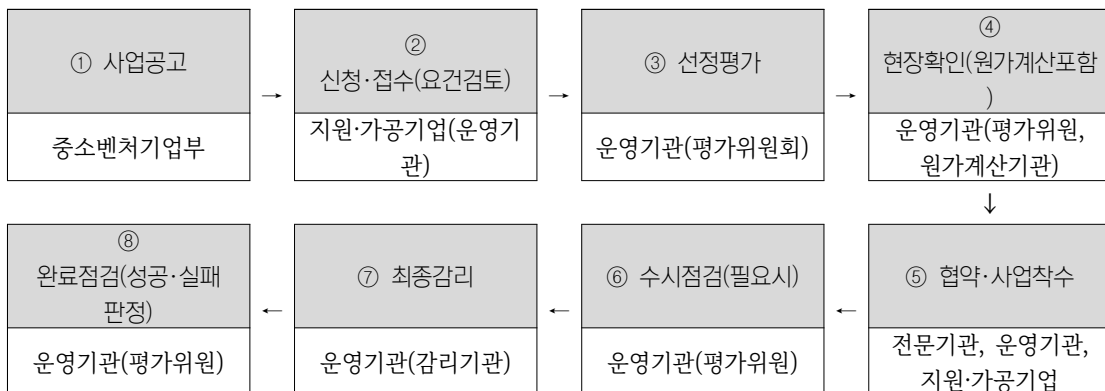
-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 지원규모 : 25개 개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 지원금액 : 12.5억원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2월(예정)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안,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절차****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전화) 044-300-0941, 0946 (이메일) kosmo1@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5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home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3-11.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제조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조AI 기술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우대사항 : 정부 주관 경진대회 수상 AI 솔루션 적용 과제, 고용노동부 주관 S- OJT 사업 참여 제조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지원내용**

- ◎ 공모방식 : 테마지정 공고
  - \* (테마분류) 지원목표와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공정혁신·경영혁신·소비자 체감형 등 4대 분류로 구분하고, 사업 공고문과 함께 테마 공개(예정)
- ◎ 지원규모 : 36개 과제 내외(1년과제 21개 내외, 2년과제 15개 내외)
- ◎ 지원금액 : 총 645억원(자부담 30% 별도, 1년과제 최대 20억원 이하, 2년과제 최대 30억원 이하)
- ◎ 지원 세부내용 : 산업안전 혁신(중대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인력문제 완화(단순·반복업무 자동화), 기업 경쟁력 강화(원가절감, 생산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중소제조 현장문제 해결 및 지역 주력산업 기반의 확산가능한 AX 선도모델 창출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말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 선정평가 : 서면평가+대면평가(2배수) → 현장평가 → 최종 선정
-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❶단기간내 성과창출 가능성, ❷향후 보급확산 용이성, ❸I 기술을 활용한 중소제조현장 핵심 애로 해결 기여도 중심
  - 수요기업(제조기업)의 준비도 및 DX 수준(50%), 제조AI 기술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 이력(50%) 균형 반영
  - 지역 주력산업 선도형에 지원하는 과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 중심으로 성공 모델 창출 후 관련 기업군으로 단계적 확산 가능성 중점 평가

◎ 추진절차



\* 평가의견 및 최종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나 기간, 과업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AX전략팀  
(전화) 044-300-0903/0904/0907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테마고시
- ◎ 고시기간 : '26.1월초 (예정)
- ◎ 고시대상 : 15개 테마정의서
- ◎ 고시내용 : 테마품질 진단 및 보완의견 수렴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의견 제시
- ② 사업공고
- ◎ 공고기간 : '26.1월말 ~ 2월말 (예정)
- ◎ 공고명 : 제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 상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검색

### 3-1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기술보호 보안·법률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지원

- 사전예방 : 기술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단·자문·교육 등 진행
- 사후구제 :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스타트업 : 설립일자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기술보호 밀착지원

-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규모 : 기본 3일, 단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심화 4일 추가 지원
  - \* 선도바우처 협약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등 중기부·협력재단이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일 지원 가능

#### 신청·접수

-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918, (이메일) support@win-win.or.kr
- ◎ 기술보호 통합상담 · 신고센터 : (전화) 02-368-8787

**참고사항**

-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 → 통합기술 보호지원반

**Q&A**

- Q. 며칠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기본 3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기부·협력재단에서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4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선도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 등)
-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은 연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 지원분야(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및 희망 전문가(보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접수완료 후 전문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접수완료 이후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약력을 확인 후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선택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 문의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 2.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 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법률 자문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기간 및 시간 |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 |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사후대응 한정)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외국 자본으로 설립·운영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 (사전예방) 영업비밀 및 지재권 관련 계약서, 기술보호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 (사후대응) 기술유출, 분쟁대응 방향설정 및 소송·행정조사 준비 서면작성 지원 등

◎ 지원규모

- (사전예방) 기업별 최대 3개월, 60시간 이내(1,500만원 상당)
- (사후대응) 기업별 최대 6개월, 80시간 이내(2,000만원 상당)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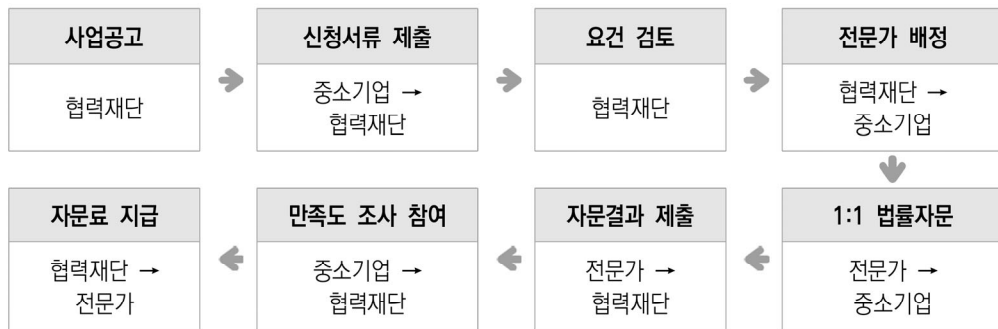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 제출서류

|                      |                                                                                             |
|----------------------|---------------------------------------------------------------------------------------------|
| 공동<br>(사전예방, 사후대응)   | ① 법무지원단 자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br>④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전예방’ 신청 시<br>추가 제출 | ⑤ 창업기업확인서 or 벤처기업확인서 o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br>서 or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 대 · 중소기업 · 농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06
- ◎ 기술보호 통합상담 · 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② 기타사항
-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

## Q&amp;A

Q. 법무와 관련한 모든내용을 지원하나요?

A. 아니요. 해당 지원사업은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사항을 지원합니다. 기술탈취 예방 측면에서는 계약서 검토, 보안 규정수립 등이 해당되며 기술탈취 대응 측면에서는 대응 상담 및 컨설팅, 유관부처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술탈취 예방은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을 선행하여야 하며, 현장자문 사업의 결과에 법무지원단을 통한 추가 기술 유출 사전예방자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침해구제팀'을 통한 법률소송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침해구제팀'은 기술분쟁 관련 소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피해 기업의 소송을 진행하며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침해구제팀' 소송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는 ①행정조사를 통한 기술탈취 피해 입증, ②행정 조사 종료 6개월 이내 신청, ③지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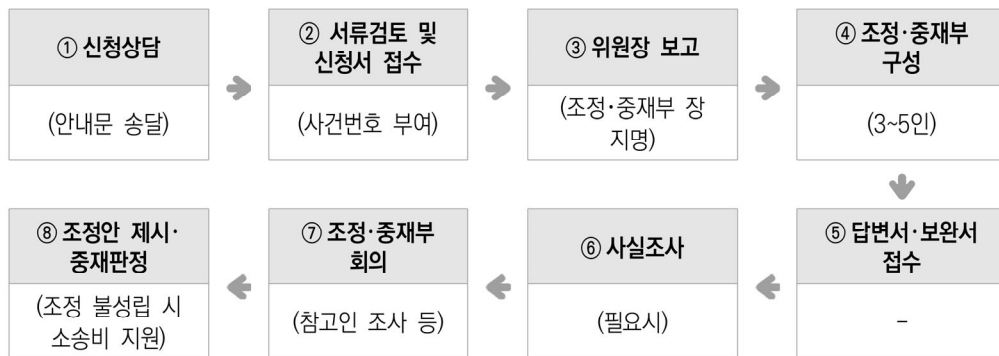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 중재위원회 :  
(전화) 02-368-8768, 8769, (이메일) [solomon@win-win.or.kr](mailto:solomon@win-win.or.kr)
- ◎ 기술보호 통합상담 · 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 4. 디지털포렌식 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소유권이 불분명한 대상물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증거 보존·분석을 위한 지원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PC, 태블릿 등)의 ①디지털 포렌식, ②디지털 이미징 지원

|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 디지털 이미징(증거 보존)                                  |
|---------------------------------------------------|-------------------------------------------------|
| 기술유출 피해 인지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유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증거화 지원 | 기술유출 피해 인지 전,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기기 증거 보존 지원 |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포렌식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2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디지털 포렌식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④의뢰물 소유권 증빙, ⑤사업자등록증, ⑥중소기업확인서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 대 · 중소기업 · 농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 기술보호 통합상담 · 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② 기타사항
- ◎ 사업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피해구제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5. 기술자료 임치**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이용방법 | 이용기업 직접이용 | 임치대행 서비스 신규도입<br>* 임치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술임치 대행' 서비스 도입 |

**지원대상**

-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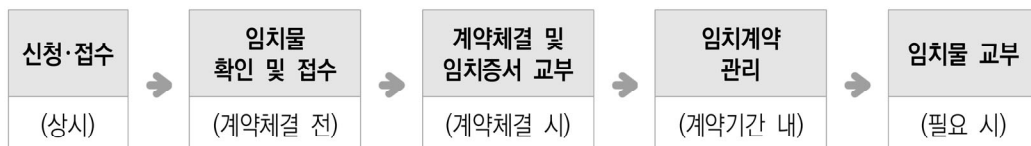
-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신청 · 접수**

-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로 접속
- ◎ 오프라인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추진절차****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간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6.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개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1. ~ '26.12.31. 상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www.kibo.or.kr)

### Q&A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유형 | ① 일반형<br>② 상생형<br>③ 바우처연계                          | ① 상생형<br>② 바우처형                           |
| 과제속성 | ① 일반과제<br>② 해외연계과제<br>③ 고도화과제<br>④ S/W 라이선스 등 지원과제 | ①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br>② 위탁관리형(SECaaS형/클라우드형) |

|        |                               |                                                    |
|--------|-------------------------------|----------------------------------------------------|
| 공급기업관리 | 등록 희망하는 공급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 요청 | 공급기업의 별도 선정·등록 절차를 마련, 기술보호 울타리에 공개하여 공급기업 POOL 관리 |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상생형(상생협력기금 연계) :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 바우처연계형(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된 중소기업
- ◎ 우대사항 : 창업기업 및 신규 참여기업 우대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과제속성<br>구분 |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                                                                                                         | 위탁관리형(SECaaS형 or 클라우드형)                                                                             |
|------------|-----------------------------------------------------------------------------------------------------------------------|-----------------------------------------------------------------------------------------------------|
| 지원대상       | 기업 내부에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업                                                                                         | 보안 전담 인력 부족, 초기 투자부담이 큰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
| 지원내용       |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br>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1회성/기간제)<br>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도입 및 구매<br>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구축비<br>* SECaaS(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제외 | SECaaS 복합 패키지*<br>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이용료(연 단위)<br>24/7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기술지원 포함<br>* 온프레미스 장비·라이선스는 제외 |

- ◎ 지원규모 : 지원유형별 00개사
- ◎ 지원금액 : 참여 기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5천만원(위탁관리형은 최대 3천만원)

**신청 · 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년도 상반기
- ⊙ 신청방법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인력 청렴·보안 서약서 등  
\* 지원유형별 상이하여 신청공고 내 상세 안내
- ⊙ 선정평가 :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진행
- ⊙ 심사 · 평가 주요내용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기술보호 추진의지 평가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추진절차

| 지원유형                              | 과제유형별 절차                                                                                                                                                                                                                                                    |
|-----------------------------------|-------------------------------------------------------------------------------------------------------------------------------------------------------------------------------------------------------------------------------------------------------------|
| 상생협력기금<br>연계<br>기술유출방지<br>시스템 구축  | <p>&lt; 공통 &gt;<br/>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모집 → 협력기업 추천 및 통합공고(수준진단 필수) → 추천<br/>협력기업 사업 신청(공급기업 Pool 제공) → WINFIS 과제신청 및 출연</p> <p>① 자체관리형<br/>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p> <p>② 위탁관리형<br/>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br/>지급</p> |
| 선도기업<br>육성 연계<br>기술유출방지<br>시스템 구축 | <p>&lt; 공통 &gt;<br/>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 모집·선정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 기업 대상 수준진단<br/>및 관련 컨설팅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 사업 신청</p> <p>① 자체관리형<br/>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협약 체결 → 과제수행 및 사업비 지급</p> <p>② 위탁관리형<br/>지원기업 선정 → 서면평가 → SECaaS형 보안 서비스 구매 →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br/>지급</p>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24, 8704, 8765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일반형)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50번 게시글
  -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접수 공고(바우처형)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349번 게시글
- ② 기타사항(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 ⊙ 제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소개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사전예방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8.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기간 | 3년간 무상지원 | 방산기업(협력사 포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5년간 무상지원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 우대사항 : 방산기업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지원기간 확대(3→5년)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 임대료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기업당 30Copy)
-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 예방(기업당 PC용 30Copy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기업당 PC용 30Copy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http://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monitor@kaits-info.or.kr](mailto:monitor@kaits-info.or.kr))
-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전화) 02-3489-7050,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mailto:monitor@kaits-info.or.kr)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www.kaits.or.kr](http://www.kaits.or.kr)

### 3-13.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확산하고, 기술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술보호 수준진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보호 인프라에 대해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신청접수        | 연 1회 | 수시   |
| 바우처 연계 지원사업 | 8개   | 10개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우대사항 : 지방소재 기업, 창업기업, 방산(물자)업체, 국가핵심 기술보유 기업 등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3년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매칭

| 수준별 점수 및 단계 |            |           | 추천 프로그램 |                                             |                                     |
|-------------|------------|-----------|---------|---------------------------------------------|-------------------------------------|
| 단계          | 점수         | 기술보호 단계   | 분야      | 필수패키지                                       | 매칭(안)                               |
| I 우수        | 75점 이상     | 선도기업(3단계) | 약점보완    | 수준진단+<br>현장컨설팅<br>(최대3회)+<br>수준확인<br>(추가가능) | 기술자료 임치,<br>기술지킴서비스,<br>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 II 양호       | 60점~75점 미만 | 유망기업(2단계) | 보안강화    |                                             |                                     |
| III 보통      | 45점~60점 미만 |           |         |                                             |                                     |
| IV 취약       | 30점~45점 미만 | 초보기업(1단계) | 인프라구축   |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br>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
| V 위험        | 30점 미만     |           |         |                                             |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가점증빙서류 등
- ◎ 추진절차 : 신청 → 자격검토 → 수준진단(적정성 평가) → 연계지원 → 수준확인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해외(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특허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기업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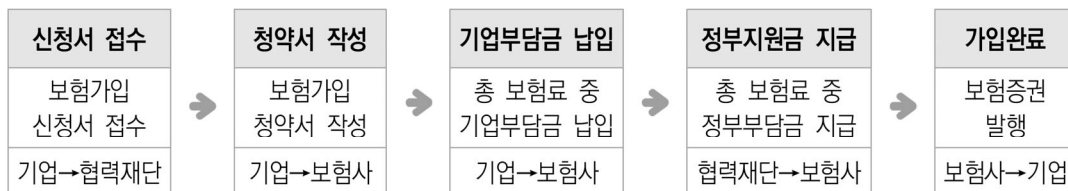
- ◎ 지원 세부내용 : 보험 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 ◎ 지원금액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보험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 <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내용 >

| 구분   | 피 소 대 응(기본)                                                  | 소 제 기(특약, 선택)                                           |
|------|--------------------------------------------------------------|---------------------------------------------------------|
| 내용   |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
| 보장기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
| 보험효력 | • 가입 즉시                                                      |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
| 보상금액 |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                                                         |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6.2월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nsurance@win-win.or.kr)
-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지원동의서, ③개인·기업(신용)정보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④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⑤사업자등록증, ⑥중소기업확인서, ⑦매출액 증빙자료, ⑧보험료 추가할인 증빙자료(해당 시)
- ◎ 추진절차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 02-368-8714
-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5년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사업개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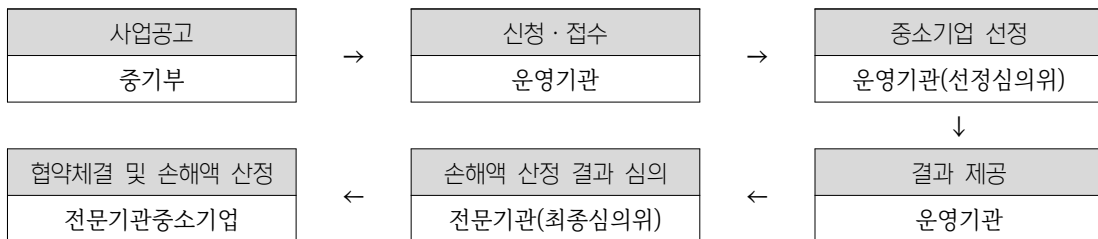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 ①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부가세 별도 부담)

-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 ②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월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
- ⊙ 선정평가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 ⊙ 추진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② 공고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 > 정보마당 > 공지사항

**4장 인력 양성****4-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사업개요**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대상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변동없음       |
| 지원내용 |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                 | 변동없음       |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58개교                                   | 특성화고 150개교 |
| 지원예산 | 27,675백만원                                    | 27,637백만원  |
| 특화교육 | 신산업·신기술+스마트공장+지역특화산업(신규)                     | 변동없음       |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변동없음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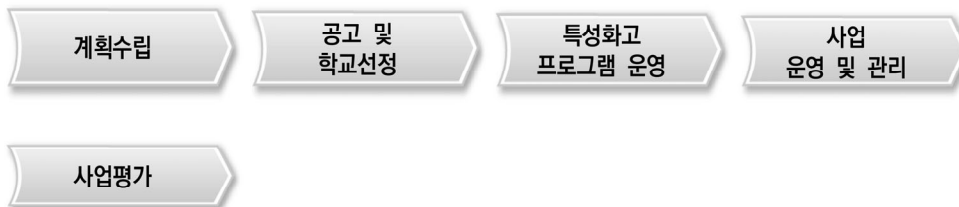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모듈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① 현장중심<br>교육과정 운영  | 1. 맞춤형(취업/산학)  |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
|                    | 2. 1팀 1기업 프로젝트 |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
|                    | 3. 교수학습자료 개발   |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
| ② 취업역량강화<br>및 취업연계 | 1. 현장학습 프로그램   |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
|                    |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
|                    | 3. 외부전문가 활용    |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 ③ 특성화마인드<br>제고     | 1. 진로지도 프로그램   |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
|                    | 2. 중소기업 이해연수   |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
|                    | 3. 교원 직무연수     |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50개교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37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성과평가(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사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smes.go.kr/sanhakin)) 참고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새소식) > 사업공고 > (검색) 특성화고

**Q&A**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참여 방법은?

A.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 관리] → [사업참여기업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신청 매뉴얼 게시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안내]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4-2.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사업개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전체 협약기업 10%내 중견기업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학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지원내용

-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전문대까지 연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 등)에 참여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등

| 대 상  | 지 원 내 용                         |
|------|---------------------------------|
| 참여학생 | • 직업교육,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연계대학 진학 등 |
| 협약기업 |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 지원규모 : 19개 사업단 / 연간 참여기업 800개사 내외

####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신규 전문대(사업단) 모집 : 1월 공고 예정, 신청 희망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추진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학교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

교 현황 > ‘기술사관’

### 4-3.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 사업개요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참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지원내용

- (학생) 최대 2년간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일반)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 재교육형(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100%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지원 및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지원규모 : 92개 학과 / 연간 참여기업 1,500개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학생)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학사일정 상이)
- (대학) 1월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학생)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 신청서 제출
  -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학생)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대학)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전문위원회)
- 심사 · 평가 주요 내용
  - (학생)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
  - (대학) 사업추진 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학생)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학생)
  - (대학)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 **4-4.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등)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매칭에서 비자발급 지원에 이르는 유학생 취업 원스톱 지원체계 추진

## 1.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 사업개요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교육 외국인 유학생(D-2)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인턴십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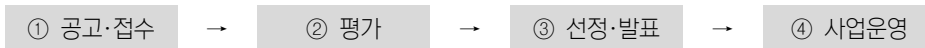
- ▶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학위과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학년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D-10) 100명 이상으로 구성
- ② (운영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 포함, 총 400시간 이상으로 운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1월
- 선정절차 : 서류·발표·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 2. K-수출전사 아카데미

### 사업개요

-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고 네트워크 등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소벤처기업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 대상 수출직무 교육 인프라(교육과정·강사·강의장 등) 및 취업매칭 네트워크 확보 기관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수출직무 희망 외국인 유학생 300명 대상으로, 학기 중 주말과정과 방학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교육
- ② (운영내용)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맞춤반 교육으로 수출전문인력 양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년 3월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현장검증(필요시)을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 3. K-Work 플랫폼

### 사업개요

-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채용·인재 정보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관심 기업 및 인재를 분류·관리하고, 구인·구직 선호항목 기반의 AI 매칭 지원
- ② 채용공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계약 체결시 신속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E-7-1)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 k-work.or.kr
- 추진절차(기업)



- 추진절차(외국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4. 비자추천(E-7-1, E-7-4)****사업개요**

- (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직종(24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지원대상**

- E-7-1 신청자격 :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GNI 80% 이상 임금 지급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 단,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해당 시 GNI 70% 이상으로 완화
- E-7-4 신청자격 : 국내 4년 이상 체류한 K-Point E74 200점 이상 득점자 및 신청 외국인 산재 가입을 완료한 국내 제조업중 중소기업
  -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E-7-1 고용추천) 고용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
- ② (E-7-4 전환추천) 전환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법무부에 통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이후
  -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연중 상시모집
- 선정절차 : 중진공 서류검토(심의) 및 중기부 최종검증 후 선정
- 추진절차(E-7-1 고용추천)



- 추진절차(E-7-4 전환추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79

## 4-5. 연수사업

### 사업개요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 6개 연수원 : 중소벤처기업(안산), 강원(태백), 충청(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구직자 등
- 지원조건 : 연수신청 연수생(기업)이 연수비 부담
  - \* 고용보험 환급과정, 할인과정, 무료과정 일부 운영
- 우대사항 : 소기업, 정책연계 과정, 신규과정 등 연수비 할인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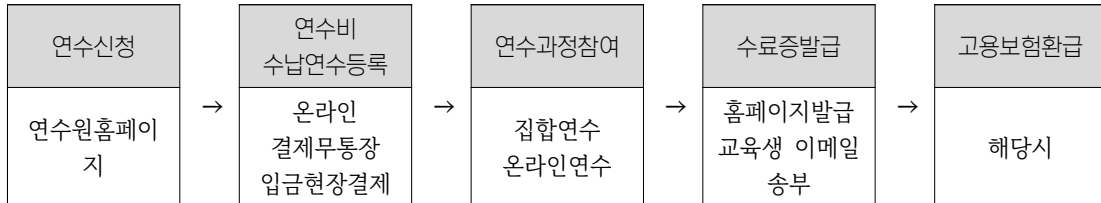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현장 맞춤형 연수, 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연수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연수 등
  - (정책연수)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중소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60,000명 내외
- 연수분야

| 연 수 분 야 |              |       |                               | 주 요 연 수 내 용                                           |  |
|---------|--------------|-------|-------------------------------|-------------------------------------------------------|--|
| 오프라인    | 직무역량<br>향상연수 | 기술연수  | 디지털신<br>산업                    |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br>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  |
|         |              |       | 뿌리기술                          |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  |
|         |              |       | 생산기술                          |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br>틱·고무            |  |
|         |              | 생산품질  |                               |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  |
|         |              | 경영    |                               |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  |
|         |              | 최고경영자 |                               |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  |
|         | 맞춤연수         | 문제해결형 |                               |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br>하여 실시하는 연수         |  |
|         |              | 현장맞춤형 |                               |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
|         |              | 조직활성화 |                               |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
|         |              | 정책연수  |                               |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  |
| 온라인     | 이러닝연수        |       |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                                                       |  |
|         | 마이크로러닝       |       |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                                                       |  |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홈페이지) <http://ssup.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지원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 문의처

- 연수원 연락처

| 구 분       | 지 역   | 연 락 처          | FAX            |
|-----------|-------|----------------|----------------|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경기 안산 | 031-490-1472   | 031-490-1116   |
| 호남연수원     | 광주광역시 | 062-250-3000   | 062-250-3077   |
| 대구경북연수원   | 경북 경산 | 053-819-5001~2 | 0505-047-4423  |
| 부산경남연수원   | 경남 창원 | 055-548-8045~6 | 055-548-8080-1 |
| 충청연수원     | 충남 천안 | 041-559-9225   | 0505-047-4097  |
| 강원연수원     | 강원 태백 | 033-550-5000   | 033-550-5015   |
| 온라인연수     | -     | 031-490-1288   | 031-490-1118   |

## Q&A

Q. 고용보험환급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수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와 회사통장사본을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RD-Net에 노동부 환급 계좌등록을 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연수생이 가져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연수생이 특별히 가져와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연수생은 숙박에 필요한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4-6.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천분야(공업(일부), 광업, 에너지)에 한함

(타 분야의 자격 및 선정요건 등은 병무청 및 해당 분야 추천권자(기관)에 문의 필요)

### 사업개요

국가산업 발전·육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청분야(중소벤처기업부) : 공업(일부)\*, 광업, 에너지
  - \* 중기부 추천분야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 \* 타 기관 추천분야 : 의료의약(복지부),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농림부), 임산물가공 (산림청), 식음료(식약처), 게임s/w·애니메이션·영상게임기(문화부), 수산물가공·해운·수산(해수부), 건설(국토부), 방위산업(한국방산진흥회)

#### 신청자격(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학생과 3자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신청자격(현역 입영대상자)

- ▶ 학사 이하 학위 보유자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면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예정)된 기간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
  -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일학습병행자격 보유중인 자도 편입 허용
  - \* 정보처리 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 우대사항
  - 국가중점정책분야(반도체, 저탄소, 소·부·장 등),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공유제 가입 기업,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 참여 기업 등
  - \* 기타 우대사항 및 우대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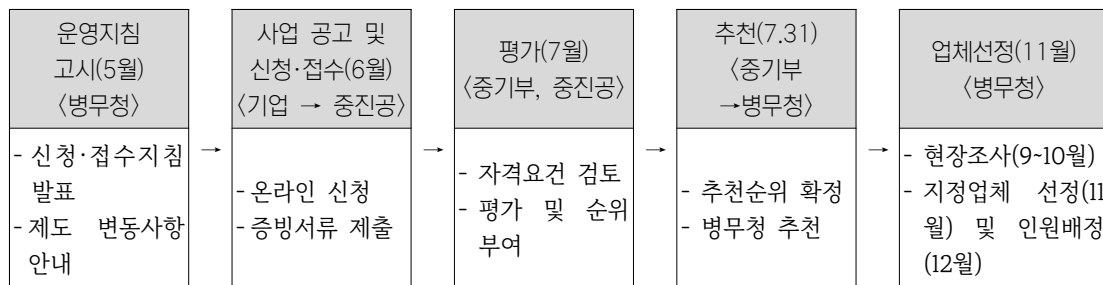
- 세부내용 :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 지원규모('25년 기준)
  - (현역) 3,200명(업체별 배정인원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최종 결

정)

- (보충역) 별도 제한없음(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매년 6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 증명서 등
- 평가항목 : 고용증감, 일자리 질, 혁신형 기업,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등
  - \* 기타 평가항목 및 점수부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 : [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 참고사항

#### ① 2026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 Q&A

Q. 병역지정업체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병역지정업체로 한 번 선정되면 선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병역지정업체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기존 병역지정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중(채용예정)인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장관에 차년도 인원배정 신청(6월)\*\*을 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통보(12월)한 인원배정 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 보충역은 예외(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추천권자에게 별도 신청 불요)

Q.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된 해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로 선정된 해에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근무중(채용예정)인 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전문연구요원도 함께 편입할 수 있나요?

A. 전문연구요원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및 평가지표 등은 산업기능요원 분야와 상이)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관련 문의는 병무청 혹은 해당분야 추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현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 혹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

## 5장 인력유입 촉진

### 5-1.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4년  | '25년  |
|------|-------|-------|
| 가입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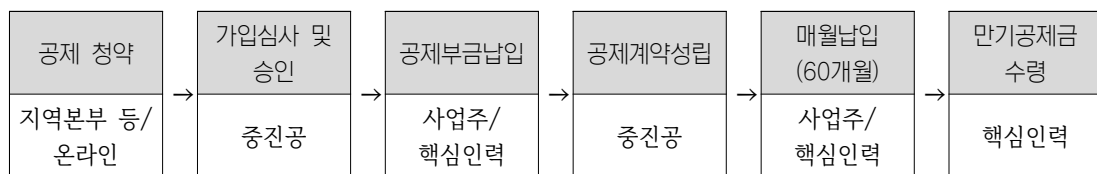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이상
  - \* '25.1월부터 3년형 가입가능
- 공제납입금 :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3년 이상 1,224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연간 400만원 이상 적립(3년 1,224만원, 5년 2,000만원 이상)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mp;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지원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법인기업) 산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일부 세액공제 적용

(재직자)

- 3년 이상 가입 후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일반 50%, 청년 90%)

\*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제외

\*\* 일부 사유(휴·폐업, 법인해산 사유)의 중도해지자도 소득세 감면 적용

휴가비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복지혜택 지원

Q.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납입금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 5-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사업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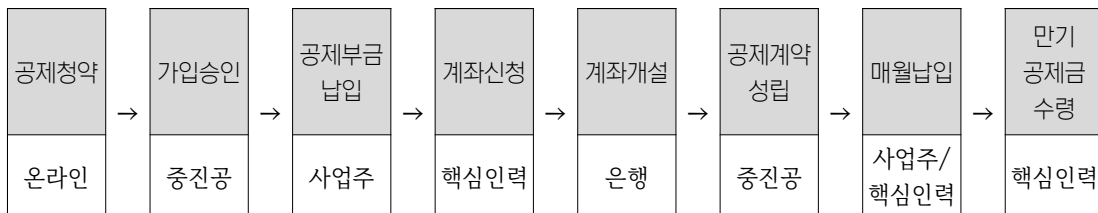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5년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2025.09)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최대 2,298만원 또는 5년간 최대 3,980만원 공동 적립(매월 12~60만원, 이자포함\*)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금액 : 3년간 460~2,298만원, 5년간 796~3,980만원(이자포함\*)
- 공제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 납부금(최대 4.5%\*)  
\* 최대 4.5%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0%)

###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 (기존) 기업(중진공), 재직자(은행) 별도 가입창구 →  
(변경) 기업, 재직자 단일 가입(중진공)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mp;A

Q. 내일채움공제 대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다른 점은?

A.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입조건, 가입기간, 납입비율, 적용금리 등이 다름

| 구분                 |     | 내일채움공제            | 우대 저축공제                           |
|--------------------|-----|-------------------|-----------------------------------|
| 가입조건               |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재직자 | 정규직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 가입기간               |     | 3년~10년            | 5년                                |
| 납입비율               |     | 핵심인력:기업 = 1:2 이상  | 핵심인력:기업 = 1:0.2                   |
| 적용금리               |     | 2.37%('24.4분기 기준) | 최대 4.5%<br>(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 |
| 월 적립금액<br>(기업+재직자) |     | 월 34만~300만원       | 월 12만원~60만원                       |

\* '25.4분기 기준 은행별 금리

(IBK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하나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농협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국민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Q.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이라도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5-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 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예비)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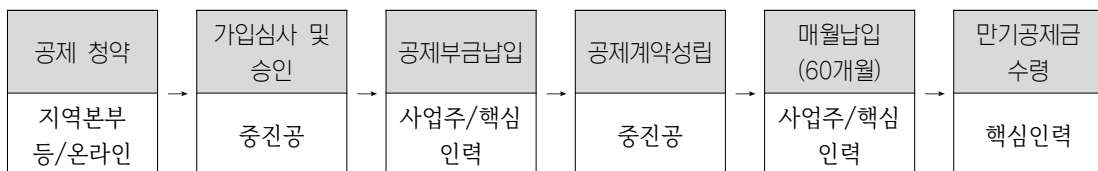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5-4.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개요**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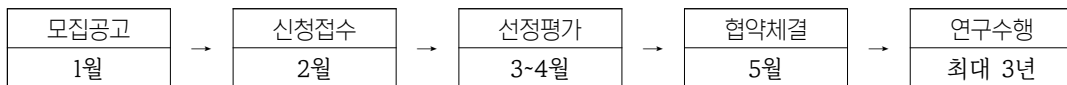
-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540명 내외(신규 260명, 계속 280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기준연봉의 50%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기                          | 지원 과제 횟수('23년~)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br>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 고경력 1회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 신청 가능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5-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이공계 등 고경력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로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등)에 해당 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 등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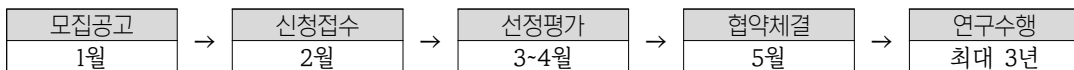
-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224명 내외(신규 85명, 계속 139명)
- 지원금액 : 채용인력 연봉의 50% 이내(최대 5천만원)

##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 · 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Q&A

-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행 가능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기                       | 지원 과제 횟수('23년~)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 고경력 1회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 신청 가능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Q. 다른 기업에서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신진, 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 인력(지원 연구인력)은 변경이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5-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 표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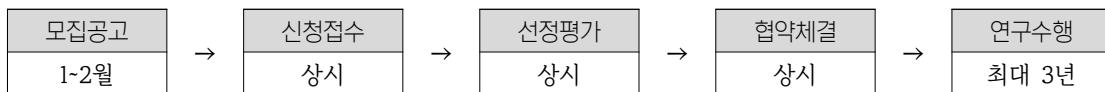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파견 연구인력 연봉 지원(최대 3년, 기업별 1명)
- 지원규모 : 총 81명 이내
- 지원금액 : 파견인력 연봉의 50%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 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Q&A

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의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A. 공고문의 매칭시스템을 통해 지원수요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 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Q. 동 사업에 참여 중 중단하게 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동 파견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기업(기업지원계약 체결)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5-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력) 자연·공학·의약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구직자
  - (기업) 자연·공학·의약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구직자
- 우대사항 :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Level3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대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시 선정 절차 우대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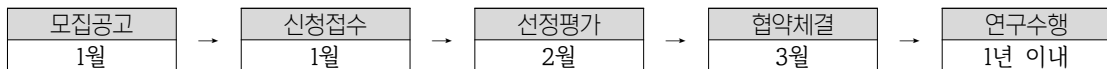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우수 예비연구자 양성 및 채용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원규모 : 총 400명 이내(4개 센터별 100명, 8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20만원
  - (Level2) 학위별 차등지급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학사 학위 취득자 | 2~4개월 | 1,300,000원/월 | <기업부담금><br>1) 월급여에서 인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br>2) 4대보험료 |
| 석사 학위 취득자 | 2개월   | 1,600,000원/월 |                                               |
| 박사 학위 취득자 |       | 1,900,000원/월 |                                               |

-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비 : 10,000천원 ~ 12,000천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6. 1월
- 신청방법 :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이메일 신청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 · 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와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공고
  - (경로)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
  - \* 한국교통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호서대학교

#### Q&A

-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 하나요?
-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Q.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만 지원가능한가요?
- A.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5-8.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 촉진

####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 구분   | '25년                                                                                                            | '26년                                                                                                                                             |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li> <li>-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li> <li>- 세제 혜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li> <li>-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li> <li>- 세제 혜택</li> <li>- (추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li> </ul>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 유형】

①성과급 / ②임금수준상승 / ③우리사주제도 / ④주식매수선택권 / ⑤성과보상공제 /  
⑥복지기금운영 ⑦정부지정기업(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등)

###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일자리 평가' 가점
- 세제 혜택(단, 성과급 유형에 한함)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공제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산학인 홈페이지([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성과공유 유형별 증빙서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여부 확인

- (선택) 성과공유유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5-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제외 대상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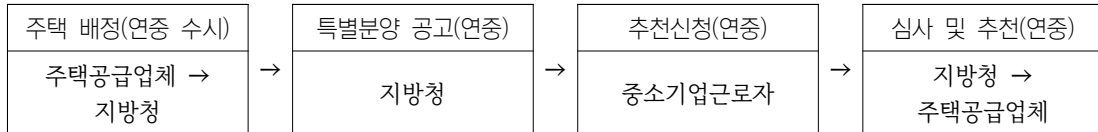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위한 추천(또는 확인)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

- \* 상세 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개별 공고문 확인
- 선정평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배점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가·감점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확인서의 경우, 자격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 및 접수)

| 소속             |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2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12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29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73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8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67 |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42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08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42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86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8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7 |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2 |             |              |

### 참고사항

- 개별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에서 확인



#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1월 21일(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 추진 배경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되었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추진 전략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대기업 중심의 수출·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된다.

### ① 대·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미국 이외의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현재 10억원) 받는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한도·금리 등) 받는다. 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가 구축(~'28년)될 계획이다.

### ②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7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3조원으로 확대(당초 1조원)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26.1월-)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26.1월-)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26.1월)되어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 ③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상생협력기금 규모가 향후 5년간('26~'30년) 1.5조원 이상으로 조성('26~'30년 연평균 3,000억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상생협력기금→정책사업 출연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 비중 확대 : ('24년) 14% → ('30년) 20%

\*\* 예)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증가율을 상생수준 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아울러, 상생협력기금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

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법 제정, '26.上)

[전략 2]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된다.

#### ① 공동 기술개발·협업을 통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25년 추경 활용분 약 1만장)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 및 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도 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26년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25년 8개사)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된다.

#### ②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평가지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 성과공유 유형 : ① 현금 공유, ②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③ 물량 확대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8년까지 연장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현행 공공 건설하도급만 의무)된다.

\*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에서 공제(최대 10%)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26.12월 시행)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30년까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25년 기준 331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34개 기관)된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7.上)

### ③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현재 25명)이 확충되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와 증거능력 인정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추진\*된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26.下)

[전략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26년, 비공표)되어,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26.1월-)된다.

\*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지원('26년 45억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2.6조원까지 확대(현행 최대 2조원)된다.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기업 지원을 매칭시키는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모기업(100인 이상)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70% 매칭 지원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의 주요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는 한편,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 I. 추진배경

- 한미 관세협상, UAE 순방,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
  - 한미 관세협상 타결(對美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 등), AI 핵심 자원(최신 GPU) 확보\* 등 통상·공급망 여건 개선
    - \* 최신 GPU 26만장(정부5만장, 네이버6만장, 삼성전자5만장, SK5만장, 현대차5만장) 확보(APEC)
  - 원전·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 및 수주 성과\*\*도 거양
    - \* 원전·방산·첨단산업·K-컬처 4개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UAE 순방)
    - \*\* 5.6조원 규모 천무 유도 미사일 3차 공급계약 체결(폴란드)
- 대규모 수주·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

→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 VIP,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 전략 마련"(제16차 수석·보좌관 회의, '5.11.27)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확산 및 생태계 고도화에는 한계 노출
  - \* 「상생협력법」제정('26년), 동반위원회 설치('0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3년) 등
- ❶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한계
- ❷ 대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기업 납품구조 변동\*, 中企기술탈취\*\* 등에 따른 대→중소기업 성과 확산 경로 약화
  - \* 조달경로의 국내→해외(현지 협력사) 대체, 공동 R&D·협업 등 협력 기회 축소 등
  - \*\* 年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4년)
- ❸ 기존 상생협력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플랫폼·금융·방산·기후 등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미흡
  - \* 업종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중(%) : (제조) 51.0 (건설) 9.1 (유통) 8.9 (IT) 3.3 등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 상생 성장전략"마련·추진

## II. 추진방향

**비전** 대·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 구현

**3대 방향**

- ① 관세협상·순방 등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확산
-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③ 플랫폼·금융·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

| 3대 방향                          | 주요 추진과제                                                                                                                                                                                                                                        |
|--------------------------------|------------------------------------------------------------------------------------------------------------------------------------------------------------------------------------------------------------------------------------------------|
| <b>1</b><br>직접적 성과<br>공유·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li> <li>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li> <li>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 조성</li> <li>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li> </ul>                                                                           |
| <b>2</b><br>대→중소기업<br>환류 경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 약 30% 배분</li> <li>2 대기업 지식·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li> <li>3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li> <li>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li> <li>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li> </ul>                              |
| <b>3</b><br>상생 생태계<br>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li> <li>2 (금융) 상생금융지수 도입</li> <li>3 (방산)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li> <li>4 (원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li> <li>5 (기후)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li> <li>6 (지역·안전) 지역경제·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li> </ul> |

### 【 주요 기대효과 】

- ◇ 상생 생태계 : 제조 중심 → 플랫폼, 방산, 금융 등 확장
- ◇ 상생협력기금 : '16~'25년 2,663억원 → '16~'30년 3,000억원
- ◇ 상생금융 : '25년 1조원 → '26년 1.7조원+α(지속 발굴·확산)
- ◇ 상생결제 : '25년 189조원 → '30년 230조원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 '24년 49점 → '30년 65점(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 Ⅲ. 세부 추진과제

#### 1. 직접적 성과 공유·확산

◇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확산

㉑ (동반진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기회로 활용

- (해외 동반진출 ❶ : 재정지원) 대·중소기업이 對美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 지원 2배 확대(중기부)
  - \* (당초)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
  - (확대)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15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 (해외 동반진출 ❷ : 금융지원) 수출지원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수출·수주금융 지원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한도·금리 등)(재경부+금융위+산업부)
  - \* 예) 수주·수출 성과의 환류·확산 방안(예: 국내 협력 중소기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자재공급 등)이 구체화된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금리 우대
- (글로벌 공급망) 대기업 현지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협력업체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고, 공급망 장벽 대응 역량 강화(산업부+방사청 등)
  - 방산 등 분야 협력업체 글로벌 인증(수출대상국 요구 규격·인증 등) 획득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방사청)
    - \* 예) GVC 30 프로젝트 사업 :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실증시험, 해외 마케팅 등 공급망 지원('26년 301억원)
  -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선정(200개, ~'0년)해 현지진출·M&A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 지원(산업부)
    - \* IP 해외출원 비용 지원, 컨설팅, 현지 법률 검토 등 현지진출 패키지 지원, 미래차 부품기업 M&A 자금 지원(인수금액의 최대 60%, 200억원 한도) 등
  - 글로벌 공급망 장벽(예: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 구축\*\* 추진(~'8년)(산업부)
    - \* EU 진출기업에 공급망 전반(협력사 포함)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 → EU 진출기업 국내 협력사의 실사 대응 부담 발생
    - \*\*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Data Space에 인권·환경 실사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청사(대기업) 플랫폼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제공 → 협력업체 실사 부담 경감

㉒ (상생금융) 대기업 기여 등을 활용해 생태계에 성장자본 공급

- (상생금융 프로그램)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신·기보, 무보 등)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현기차-금융권-협력사 사례: 당초1조원→확대1.3조원 규모)(산업부+중기부+금융위)

#### 현기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

|                     |                                                                                                                                                                                    |
|---------------------|------------------------------------------------------------------------------------------------------------------------------------------------------------------------------------|
| 저금리 대출<br>(2,00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국민銀 50억원 출연 ×20배수 = 1,000억원</li> <li>▶ (기보) 현대차 50억원 출연 ×20배수 = 1,000억원</li> </ul>                                                   |
| 보증서 발급<br>(8,70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현대차·금융권 160원 출연 ×15배수 = 2,400억원</li> <li>▶ (무보) 우리銀 215억원 출연 ×20배수 = 4,300억원</li> <li>▶ (무보) 현대차 100억원 출연 ×20배수 = 2,000억원</li> </ul> |
| 회사채 발행<br>(2,25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현대차 70억원 출연 ×32배수 = 2,250억원</li> </ul>                                                                                               |

-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26.1월~)(금융위)
-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 출연 및 무보 보증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26.1월~)(금융위+산업부)
-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재경부)
  - \* 중견기업 지원 목적 5%,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 '8.12.31까지
  -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 법인세 既 감면 중)
-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26~'30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 조성(연평균 조성규모 : '16~'25년2,663억원 → '26~'30년3,000억원 이상)(중기부)
-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방산 체계기업(대기업) 등에 인센티브 등\*\* 부여(중기부+방사청)
  - \*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상생협력기금→정책사업 출연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 비중 확대 : ('4년) 14% → ('0년) 20%
  - \*\* 예)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증가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검토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중기부)
  - \* (現)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관)(민간, 공공)이 지원용도대상 지정(협력사 위주로 지원) →
  - (改)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비협력사 스마트제조AX, 소상공인 등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전략수출금융기금)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재경부)

-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락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근거법 제정, '26.上)

- ▶ (재원) 정부 출연·보증 + 정책금융기관 출연 + 수혜기업 기여금 + 정부납부 기술료
- ▶ (운용) 대규모, 장기·저신용 수출금융(대출·보증) +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

##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공동 기술개발·협업)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 (GPU) 정부 확보 GPU(5.2만장) 중 '25년 추경 활용분(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에 약 30% 배분 추진(사용료: 시장가격의 약 5~10%)(과기부)
  - 정부 GPU 공급(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기부)과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간 연계(과기부+중기부) 추진
    - \*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에 배분,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소·스타트업 활용 촉진 등
  - (지식 확산) 정부·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중기부)
    - \* (現) 상생협력기금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안전보건, 상생 ESG 등 민관 공동전략 등으로 개별 사업에 특정한 지식 공유에 국한 → (改) 상생협력기금에 지식확산형을 신설하여 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 일반 지식의 확산 촉진
  - (스마트공장) 대기업·공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5년 340억원→'26년 400억원)(중기부)
    - \*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한도)
  -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5년 8개사 → '26년 20개사)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중기부)
    -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분담률(%), 정부:대기업:중소기업) : (일반형) 30:30:40 (AI분야) 50:20:30
  -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현장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100개, ~'0년)(산업부)
- (개방형 혁신)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을 확대('25년200억원→'26년 242억원)하고,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중기부)

- \* 지원내용 : (매칭)협업 파트너 매칭 → (기술검증)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기업당 최대1.4억원 지원) → (시장검증, 신설)후속 시장검증 지원(기업당 최대2억원 지원)
- (인력양성)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6년 2,000명 양성 목표)(노동부)
  - \* '26년 예산 100억원(20개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개소당 100명 양성 계획)
-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협력 중소기업에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중기부)
  - \* 대·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실시, 협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26년 30억원)  
↳ ('25) LG CNS, 포스코 등 13개 → ('26)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등 확대 추진
- (공동 R&D) 중견기업과 중소기업(2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R&D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산업부)
  - \* '5년 156억원(5개 과제) → '26년 252억원(15개 과제)
- 중견·중소 컨소시엄 내 환류 경로 강화를 위해 현금배분, 물량확대 등 성과공유계약 의무화(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등)(산업부)
- (데이터) 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 지원('26년 94억원)(과기부)
  - \* 데이터 공급기업(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구매·가공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상생협력 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성과 환류 생태계 기반 강화

-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중기부)
  - \* (現) 수·위탁기업 → (改)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상생협력법」개정, '26.上)
-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개선\*\*중기부
  - \* ①현금 공유, ②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 ③물량 확대
  - \*\* (現) [현금·현금성]공유 금액만 인정 + [물량확대]발주계약 금액 전체 인정 → (改) [현금·현금성]공유 금액 2배 인정 + [물량확대]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한해 위탁기업이 발주한 금액만 인정, 그 외(단가절감, 성능개선 등)는 현금 공유액만 인정
-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하도급 계약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중기부 등)

-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0.15~0.5%) 일몰 연장('5년→'8년)(재경부)
  - \*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에서 공제(최대 10%)
  - ※ 세액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0.3 (31~60일) 0.15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 반영(행안부)
- 공공 하도급(건설·제조·용역)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 등)
  - \* (現) 공공 건설 하도급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등)
  - (改) 건설 포함 제조·용역 분야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단계적 의무화
- (동반성장평가)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 우수기업(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동반성장평가 내실화 추진(중기부+동반위)
  - 금융·플랫폼·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발표\*(동반위)
    - \* (現) 동반위 평가(50%)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50%)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 (改) 금융위(금융), 방산청(방산) 등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 별도 개발·산정
  -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중기부+동반위)
    - \* (現) 수·위탁 실태조사 및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5년 기준 331개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중기부)
    - \* (現) 공기업 전체 31개, 준정부기관 전체 57개, 기타공공기관 46개 대상 실시
    - (改) 기타공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26년) 후 단계적 확대(~'0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재경부)
    - \* 공기업(SOC·에너지) 1.5→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2→2.5점 / 준정부기관 1→1.5점
-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중기부+공정위)
  - \* 「상생협력법」본회의 통과('5.11.13, '26.12월 시행), 「하도급법」법사위 통과('5.12.3)
-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중기부)
- (피해구제기금)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 마련('26.上)(공정위+중기부)
  - \* (재원)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年 5,000억원 수준) 일부(20% 이내)
  - (용도) 소송지원,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

- (中企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중기부+공정위)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 (사회연대경제)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간 협력사업 발굴, 사회연대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 지원(행안부)
  - 사회연대경제 민간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독려
    - \* 법인·기업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융자 지원, 사회가치 창출 목적의 자금 공급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금

### ③ (기술탈취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및 행정처벌·제재 강화

- (대응체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 구성·운영('26.1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 「IP 법률지원단」을 신설\*( '26.下)해 초기 분쟁대응(경고장 발송 등)부터 심판·소송 대리, 분쟁조정 등 통합 지원(지재처)
  -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 (손해배상 현실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중기부)
  - \*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 손해액 산정 가이드 마련·배포
- (수사·조사 강화)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現25명), 수사·조사기관 대상 기술자문 제공(지재처)
  -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운영 및 익명제보 활성화(공정위)
    - \*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 → 불법행위 정보 수집
- (제재 강화)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중기부+공정위)
  -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現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중기부)

\* 「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26.下)

- 기술탈취 빈발 업종(기계, 차부품 등) 직권조사 강화(연 2→3회)(공정위)

### 3. 상생 생태계 확장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지역·산업안전 등으로 확장

- ❶ (플랫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공정위)

-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 (現) 제조·건설·유통업 등 250개사 → (改)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

- ❷ (금융)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26년) 및 포용·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일정) 평가지표 마련(~'6.上) → 시범 평가('26.下) → 본 평가('7)

\*\* 민간금융권 생산적금융 525.5조원(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 포용금융 77.5조원

- ❸ (방산) 체계기업(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간 협업 촉진방사청+중기부

-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를 신설('6년, 비공표)\*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사청+동반위)

\*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 절충교역,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

-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방사청,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중기부+방사청)

\* (現) 군이 성능·전력화 시기 등 결정 → (改)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 제안

- ❹ (원전) 원전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 지원('6년 45.3억원)(산업부)

- 美, 튀르키예 등 원전 수주 유망국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공급사와 B2B 미팅 지원(산업부)

- ❺ (기후)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기후부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 (現) 최대 2조원 → (改)

최대 30% 가산(최대 2.6조원)

- 중소·스타트업 등의 기술·아이디어를 대기업의 탄소감축문제에 활용(개방형 혁신, '26년 10개사)(기후부)
- 대·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를 가동해 대기업 해외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수주모델 구축(기후부)
-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구성·출범('3.1월), 74개 기관 참여 중

#### ⑥ (지역·산업안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안전 관련 상생협력 강화(노동부+동반위)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동반위)
- \* 시도별 특화산업·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지방정부) →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지방정부 매칭(동반위) →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협력(동반성장지수 우대)
- \*\* 지역사회 동반성장 배점 확대(현행 1점) 등 우대방안 검토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소업종으로 확대\*\*(노동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추진(동반위)
- \* 모기업(100인 이상)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70% 매칭 지원
- \*\* (現) 건설업 제외 모든 업종 지원 중 → (改) '26년부터 5개 종합건설사 및 5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범 운용 후 확대 검토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해 추진과제 점검

\* 중기부-동반위 주관, 10대 그룹 및 협력사, 경제단체·학계, 관계부처 등 참여

## IV. 추진계획

| 정책 과제                            | 추진시기      | 부처·기관         |
|----------------------------------|-----------|---------------|
| <b>1. 직접적 성과 공유·확산</b>           |           |               |
| ▶ 대·중소 對美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       | '26.      | 중기부           |
| ▶ 수출·수주금융 지원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   | 계속        | 재경부, 금융위, 산업부 |
| ▶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 구축 추진(~'8년) | '26.1/4~  | 산업부           |
| ▶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 '26.~     |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
| ▶ 상생협력을 위한 무보 출연금 법인세 5~10% 감면   | '26.1~    | 재경부           |
| ▶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 조성      | '26.~'30. | 중기부           |
|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근거법 제정)            | '26.2/4~  | 재경부           |

##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          |               |
|---------------------------------------------------------------|----------|---------------|
| ▶ 정부 확보 GPU(5.2만장) 중 '5년 추경 활용분(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에 약 30% 배분 추진  | '26.1/4~ | 과기부           |
| ▶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                          | '26.     | 중기부           |
| ▶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100개, ~'30년)                           | '26.     | ~'30. 산업부     |
| ▶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 확대                         | '26.     | 중기부           |
|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6년 2,000명 양성 목표)                          | '26.~    | 노동부           |
|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26.     | 중기부           |
| ▶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                                              | '26.     | 산업부           |
| ▶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 '26.     | 과기부           |
| ▶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상생협력법」개정)                        | '26.上    | 중기부           |
| ▶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현금성 공유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개선                        | '26.1/4~ | 중기부           |
| ▶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0.15~0.5%) 일몰 연장('5년→'28년) | '26.1~   | 재경부           |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 정량평가(0.3점) 반영                           | '26.下    | 행안부           |
| ▶ 공공 하도급(건설·제조·용역)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        | '26.~    | 공정위, 국토부 등    |
| ▶ 금융·플랫폼·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발표                                   | '26.~    | 동반위           |
| ▶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                                | '26.~    | 중기부, 동반위      |
|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現 134개) 단계적 확대                               | '26.~    | 중기부           |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                              | '25.9    | 재경부           |
| ▶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26.12~  | 중기부, 공정위      |
| ▶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 '26.1/4~ | 중기부           |
| ▶ 피해구제기금 설치방안 마련                                              | '26.上    | 공정위, 중기부      |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및 협상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 '27.上    | 중기부, 공정위      |
| ▶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발굴 등                                   | '26.     | 행안부           |
|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상생협력법」('26.上), 「하도급법」('26.下) 등 개정)           | '26.上~   | 중기부, 공정위, 지재처 |

|                                                                                 |          |               |
|---------------------------------------------------------------------------------|----------|---------------|
| ▶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상생협력법」(’26.上), 「하도급법」(’26.下) 등 개정)                  | ’26.上~   | 중기부, 공정위      |
| ▶ IP 법률지원단 신설                                                                   | ’26.下    | 지재처           |
| ▶ 손해배상액 산정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도 반영                                                      | ’26.下    | 중기부           |
| ▶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現 25명) 확충                                                   | ’26.~    | 지재처           |
| ▶ 행정제재 확대(現 시정권고→ 改 시정명령, 벌점 등) 및 중대 위법행위 대상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 | ’26.下    | 중기부           |
| <b>3. 플랫폼·금융·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b>                                                 |          |               |
| ▶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                                                     | ’26.     | 중기부, 동반위      |
| ▶ 상생금융지수 도입                                                                     | ’26.     | 금융위, 중기부, 동반위 |
| ▶ 포용·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 ’26.     | 금융위           |
| ▶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및 상생수준별 인센티브 마련                                                | ’26.3/4  | 방사청, 동반위      |
| ▶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                                                                   | ’26.下~   | 방사청           |
| ▶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                                                      | ’26.     | 중기부, 방사청      |
| ▶ 원전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 ’26.     | 산업부           |
| ▶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                                               | ’26.     | 기후부           |
| ▶ 대·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 가동                                                          | ’26.     | 기후부           |
|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            | ’26.1/4~ | 동반위           |
|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3업종으로 확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 ’26.1/4~ | 노동부, 동반위      |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 고용노동부 -

## I. 검토 배경

❖ 국민께 신뢰받는 감독행정을 토대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 필요 → 근본적·혁신적 감독행정 체계 개편 시급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 필요한 시점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 일터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혁신적 감독 행정체계 개편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독 규모는 여전히 부족
  - '24년 근로감독 물량 5.4만 개소는 전 사업장 대비 2.6%에 불과,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증가\*에 따라 사업장 감독 여력 부족
    - \* [신고사건수] ('22년) 31만건 → ('23년) 37만건 → ('24년) 41만건(10.8% ↑)
- 현장의 근로감독관 역할과 전문 역량 중요성 확대
  - 체불·직장 내 괴롭힘 증가, 근로자성 판단 등 복잡한 노동 이슈 확대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전문성은 점차 높아짐
  - 사망 사고유형 다양화, 일부 고위험·대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반복 등 현장 위험요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역량 집중 필요

## II. 現 감독행정 진단

### 1. 실질적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예방적 감독 체계 미흡

#### □ 사후적 사건처리 중심 감독행정

-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처리가 분절되어 대다수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신고사건 또는 산업안전중대재해 대응 중심으로 업무 수행
-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진정인이 신고 시 각각 다른 감독관이 담당·처리하는 경우 발생 등 지역·사업장 중심 체계적 관리에 한계

현장의  
목소리

“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담당 감독관이 달라요. 우리 회사 상황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담당 감독관이 왜 매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사업주)

- 근로기준·산업안전 간 독립적으로 감독을 시행함에 따라 파편적으로 대응하거나 동일 사업장 대상 중복 감독으로 비효율성 발생
- 감독 이후 신고사건, 안전사고 발생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 부족으로, 사업장 노동환경 실질적 개선 미흡

#### □ 소규모 사업장 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

-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재정 등의 한계로 노무관리·산업안전 역량 부족, 노후 설비·불안전한 작업 방식 등 다양한 위험 상존
  - \* 임금체불액 1조 8,851억원(전년동기비 +1.0%) → 30인 미만 사업장 67.5%(‘25.11월)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 차지(275명/457명, ’25.3분기)
- 중앙정부 감독만으로는 지역별 현안 및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등 고려한 종합적 원인 분석 및 해결에 구조적 한계

### 2.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지원 부족

#### □ 채용·보직 경로와 교육 간 연계 미흡

- 감독관이 장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특화된 경력 관리 체계 부재로 보직 배

치 등에 경력 활용 제한

- 교육과 인사 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하여 감독관이 역량 제고 및 경력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근본적 인센티브 부족

## □ 근로감독관이 전문가로 성장할 교육 환경 미비

- 사업장 감독 확대를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노력 필수적
- 이론 중심으로 현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참여형 교과목 부족, 역량과 업무 필요도에 맞춘 수준별·맞춤형 교육체계 미흡
- 과도한 업무량, 인력 부족 등으로 일하면서 배우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여, 재직 중 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

\* [24년 감독관 교육시간(신규교육 제외)] 노동 22시간, 산안 20.8시간(평균 21.4시간)

현장의  
목소리

“주입식 교육 90% 이상, 공부 열심히 해도 현장 와서 모르는 것이 대부분”  
“신규감독관 교육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고경력자 대상 교육이 적어요”

## 3. 감독 행정 관련 법적·제도적 인프라 부족

- 감독관 역할 증대에 따른 감독 권한에 대한 통일적 법적 근거 부족\* 및 근로감독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높지 않은 상황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여러 법에 산재
- AI 기술 확산에도 단순 민원 대응, 진술조서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장시간 소요되어 현장 점검 등 핵심 감독 업무 집중에 한계

### Ⅲ.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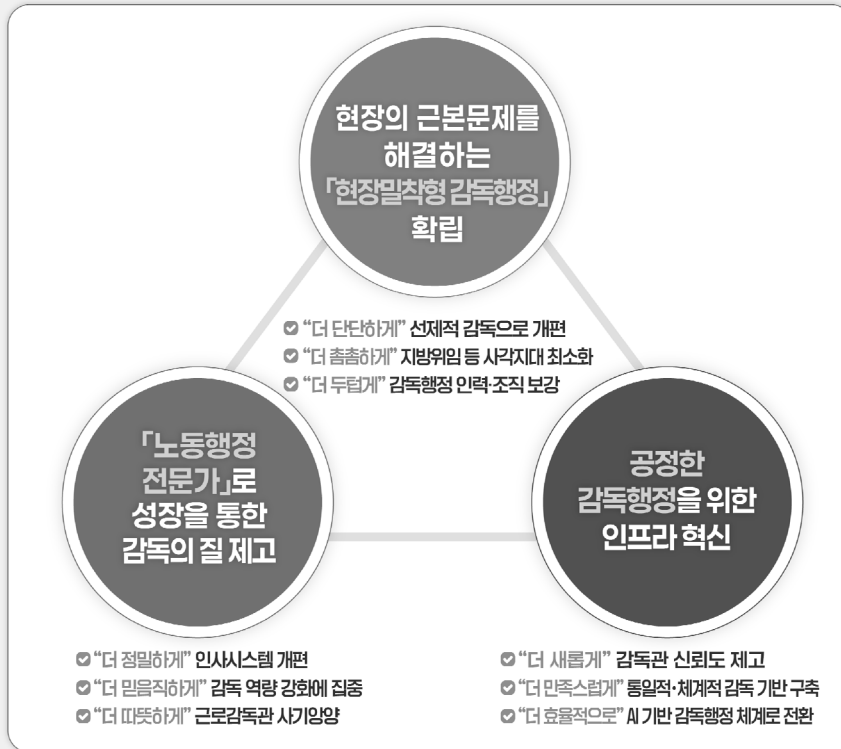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 목표

- ✓ **감독 물량** OECD 평균 14만개소(총사업장의 7%) 확대(~'27년)
- ✓ **임금체불액** 2조원 → 1조원으로 절반 감축(~'30년)
- ✓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0.29‰ 달성(~'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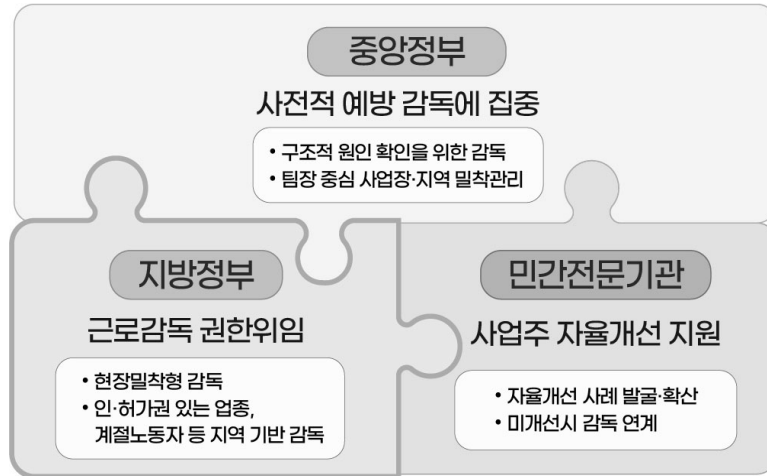
##### 전략

- ✓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 등 노동현장의 실질적 개선
- ✓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기틀 확립



1

현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감독행정」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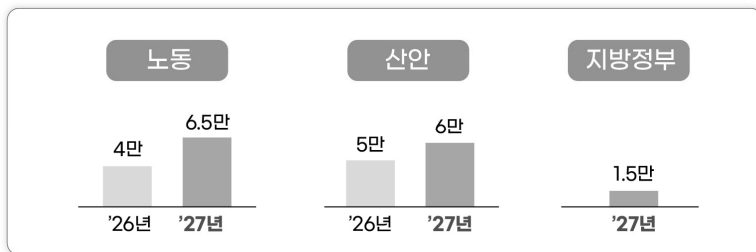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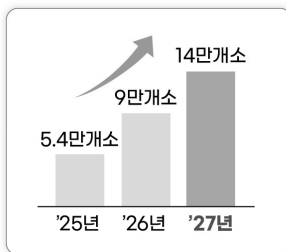
① “더 단단하게”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

1. 감독 물량 확대 및 감독 방식 개편

□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부터 중점 감독

- (물량 확대) 현재 5.4만 개소(全 사업장의 2.6%) 수준인 감독 물량을 ‘2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4만 개소(全 사업장의 7%)로 확대

\* (’25) 5.4만개소 → (’26) 9만개소 → (’27) 14만개소



- (대상 선정) 우선적으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에 집중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 타겟팅 (targeting)

- ①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 기반 AI를 토대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및 산재 정밀 예측하여 감독 대상 선정
- ② ‘숨어있는 체불’ 발굴을 위해 체불 신고 사업장은 감독 원칙,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

안전띠) 홍보·계도 및 일제 점검(분기별)

- ③ 가짜 3.3 위장,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대재해 급증한 「작은사업장(지붕·축사, 벌목 등)」 등 취약계층·사업장 보호에 중점
- ④ 안전일터 신고센터('25.8월~), 재직자 익명제보('24년~, 現 연 2~3회)상시화 →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 등에 대한 중점 감독·점검

□ 법 위반 발생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한 감독 실시

- (노동·산안 통합) 현안 사업장 및 복합문제 사업장 대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 + 산업안전 통합감독」확대

|              |                                                                       |
|--------------|-----------------------------------------------------------------------|
| '25년<br>통합감독 | 강원화원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10대 건설기업 체불·산재 감독, 반얀트리 호텔 화재·태안 화력·SK에너지 폭발 사고 등 |
|--------------|-----------------------------------------------------------------------|

- (상시 대응)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위해 기획감독 착수 여부 즉시 검토
  - 불시 패트를 점검을 신설하여 위험 현장에 대한 기동형 점검 체계 운영(1억 미만 공사현장, 도·소매 등 기타업 산재 예방)
- (즉시 제재) 상습·악의적 사업주 대상 선제적 특별감독 후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화
  - 산업안전 분야 일반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 추진
    - \* 중대재해 외에도 심각한 산재, 붕괴·화재·폭발 등 우려 시 적극적 작업 중지 명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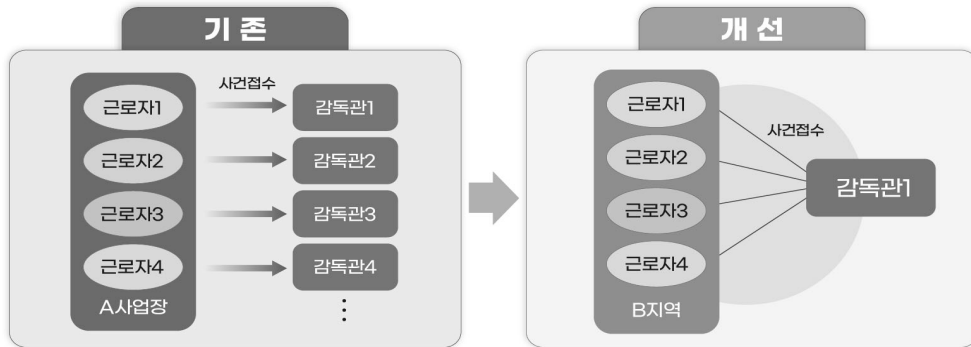
□ 감독 기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관리 강화

- 체불 전수조사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제기된 경우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전반 등에 대해 재감독 실시
- 고위험 사업장(예: 중대재해 또는 반복 산재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감독하여 개선 이행 여부 확인

## 2.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한 감독 품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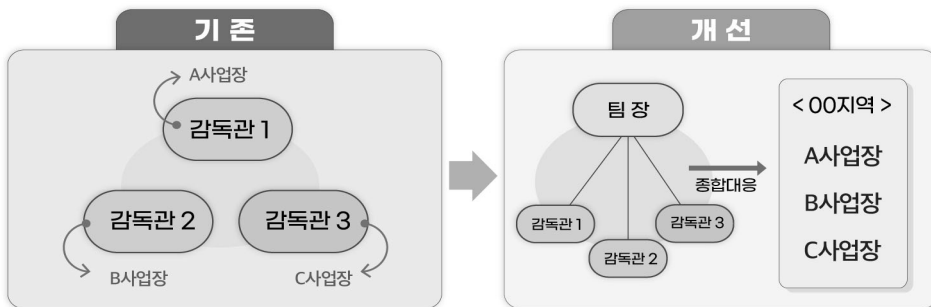
□ 지방관서별 지역 및 주요 사업장 전담제 실시

- 사업장 관리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단위 전담제 원칙
  - 다만, 관서 특성상 산업재해 반복 발생, 상습 체불 등 사업장 단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험 사업장 선정·관리



□ 감독부서 내 팀장 중심 감독체계 구축

- (팀제 구축) 감독관의 경험·경력별로 사업장 관리·감독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 현장 정착
- 팀장 중심으로 감독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감독반 구성, 감독 대상 배분 등 감독의 균질성 및 공정성 확보



- (권한 부여) 팀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팀장에 중요사건 검토권, 팀원 대상 근무성적 평정 의견제시권 등 권한 부여 검토
- (인센티브) 팀 중심 성과 도출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의 감독관 및 부서’ 외에 ‘올해의 감독팀’을 추가로 선정·포상

2 지방위임 등“더 촘촘하게”보호하여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

1.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촘촘한 예방감독 체계 구축

- (예방 강화) 임금체불·산업재해 해결의 핵심은 예방 감독 확대  
→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내 사각지대 없이 예방 감독 실시

- 지방정부는 영세 업종·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여 경미한 위법 예방 +  
중앙정부는 지역 감독행정 설계·운영 및 중요 사안에 대응 강화
  - (감독 체계) 중앙정부 지휘·감독 下 일관성·통일성 있는 감독 실시
  - 지방정부는 ①사전협의 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②노동법·산안법 전반에 대한 ③사업장 감독 및 사후조치(사법경찰권) 실시
    - \* 위임 제외: ① 사회적 이슈, 전국 단위, 새로운 법령 해석 필요 등의 사업장,
    - ②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③ 신고·진정 사건
    - \* 우선시행대상: 지방정부 인·허가 업종 및 특사경 출입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
  - 지방의 접근성·정보력이 높은 인·허가 업종, 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안전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
- 지방 감독시스템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실시
- (운영기준 수립)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위임 사업장을 사전결정, 감독 절차·내용·조치 표준화 및 조직·인력 운영 기준 제시
  - (관리·평가) 감독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부실·과잉 감독 확인 및 시정 조치, 매년 결과 평가 및 예산·인력 인센티브 마련
    - \* 일관성 확보 방안: (사전) 감독관 임면 승인, 중앙감독관 배치, 시행계획 보완 요구 (사후) 위임사무 지도·감독,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감사·제재, 위임권한 철회 등
  - (지원·협력) 지방노동관서와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합동점검·OJT 공동 수행, 인력·경비·연계사업 예산 지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

## 2. 타부처 및 민간전문기관 협업 강화

- 분야별 타 부처와 합동 감독으로 감독의 파급력 확대
- (국토부) 공사비 분쟁 시공 등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중 임금체불, 중대재해 가능성 높은 현장 위주 합동 감독('25년 100개소→'26년 100개소+α)
    - \* (국토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우리부) 임금체불·직접지급·산업안전 점검
  -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계절 노동자 등)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시, 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 점검 추진(반기 1회)
    -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관리지침 위반 + (우리부) 임금체불, 강제근로 등 노동법 위반
  - (국세청)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및 사업장 쪼개기, 가짜 3.3계약 등 노동법 회피 사업장 대상 등을 통보하여 세원 관리에 활용
  - 국세청과 근로·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정보\* 및 익명제보·상습체불사업주 명단 등을 공유하여 근로감독 효과 제고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협조 가능('25.10.23 시행)

□ 민간전문기관과 연계로 사업주 자율개선 지원

- (자율개선) 신설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등은 감독을 통한 제재보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 지원

민간전문기관별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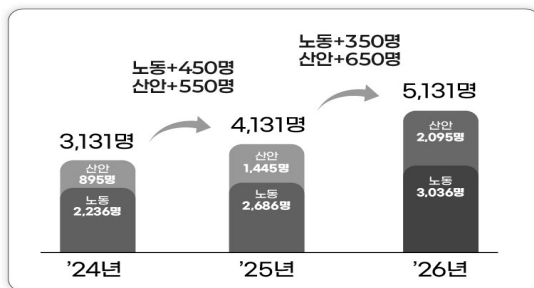
- ▲ (공인노무사회)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등 개선토록 전문가 서비스 지원 확대(現 20인 미만 → 改 30인 미만)
- ▲ (노사발전재단·민간기관) 감독·신고사건 처리 시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한 사업장을 컨설팅으로 연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 (민간재해예방기관)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재해유형(영세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중심으로 연계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 지도 등 집중 관리
- ▲ (안전·보건 협회) 종합적 기술지원을 위해 지방관서·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협조 체계(핫라인)를 구축하여 영세사업장 관리 강화
  - 법 위반 적발시 즉시 통보·감독, 개선 필요 시 재정지원·종합 기술지원 연계

- (결과 활용) 사업장별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소규모 사업장용 노무관리 가이드북」 마련 및 자율적 개선 지속 지원, 미이행 시 감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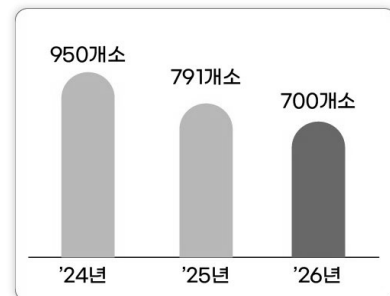
③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 인력조직 보강

□ 국가의 보호·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 (인력 증원)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5~'26년간 2천명 증원 → 예방 감독 중심 역량 강화
  -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를 적정화하여 노동자·사업주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인적 기반 확보



<전체 감독관 인력 증원>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

- (안전 강화)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 상향 추진  
(‘25년 7:3→’28년 5:5 목표, 지방정부 포함)

□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 확대를 위한 조직 강화

- (총괄) 노동부 본부 내 노동 및 산업안전 감독 총괄·조정 조직 신설
  - 근로감독 전담국인 「근로감독정책단」 복원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 범부처 노동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청) 사업체·종사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전속 관할청 신설(현 경기도지청 → 경기청 승격) 및 20년 만에 지청 신설(2개)로 현장 조직 기능 강화
  - \* 업무량, 지방협업 등 고려하여 울산동부·서산지청 신설
- (부서) 감독·수사 기능 체계화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79개 부서 신설
  - (▲ 근로기준 39개, ▲ 산업안전 40개과·팀)

|    |                                                                                       |
|----|---------------------------------------------------------------------------------------|
| 노동 | · 노동기준감독과(신설) · 노동기준조사과(現 근로개선지도과)                                                    |
| 산업 | · 광역산재예방감독과(신설) 및 산재예방감독과(現 산재예방지도과)<br>· 건설산재예방감독과(現 건설산재지도과) · 중대재해수사과(現 광역중대재해수사과) |

2

「노동행정 전문가」로 성장을 통한 감독의 질(質) 제고

① 채용부터 경력까지 “더 정밀하게” 인사시스템 개편

□ [채용 관리] 잠재적 역량 있는 인재 발굴·채용

- (채용 확대) 노동·산업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 적극 확보
  - 7·9급 공채를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직류(‘18년~, 노동법 필수)로 선발하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지속 근무 가능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
    - \* 쏘 산업안전감독관의 36.8%(‘25.8월) → 70%까지 충원(국정과제)
- (공직 내·외 경력 활용) 민간 및 타 부처(지방정부 포함)의 노동, 산업안전, 전문기술 분야 경력자 채용을 통해 역량 결집
  - 민간경력채용인사처 주관 선발 시 전문성 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학위·자격 등 채용 우대요건 강화(예: 7급 석사 이상, 노무사 근무경력 등)
  - 타 부처 및 지방정부 기술직 공무원 일방전입·경력채용 추진
    - \* ‘25.7월~12월 일방전입 2회·경채 2회 추진(14명 선발), ‘26년에도 지속 추진
  - 산업안전 현장감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산업안전 분야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 ‘25년 7급 191명 채용, ‘26년 7급 200명 채용 계획

□ [보직 관리] 근로감독관에 특화된 보직 관리 체계 강화

- (전문직위) 장기 재직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정원의 10%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群 추가(4-8년간 전보 제한)
  - \* (현행) 산재예방 분야 전문직위군(110개 직위) → (추가) 노동 분야 전문직위군 신설
- (보직경로) 전문분야 내 보직 이동으로 「근로감독관 → 감독부서장 → 본부 과장·기관장 → 고공단」 등 6급 이하 전문직 공무원 양성 경로 검토
- (분야별 순환) 감독행정 종합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순환 전보 원칙 확립
  - \* (노동) 신고사건 → 사업장 감독 → 노사협력, (산안) 사업장 감독 → 중대재해 수사

□ [인사 관리] 감독·수사 유인 제고를 위한 승진·평가체계 설계

- (유인 체계) 지방관서 팀장·부서장 등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승진 등 유인구조 및 평가체계 설계
  - 감독·수사 분야의 역량있는 직원들이 관리자로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 마련
- (특승 가점) '올해의 감독관\*' 등 성과 우수자 개인뿐 아니라, '올해의 감독팀'에 대해서도 5급 특별승진 1차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추진
  - \* 해당연도 실적이 우수한 근로감독관 선정, 장관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95~)

□ [경력 관리] 공인전문인증제 신설 및 인사·교육 연계

- (전문성 인증) 노동·산업안전 등 노동부 직원 중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 신설('26.1월)
  -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급 인증 후 추가 경력 및 성과 창출 시 1급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설계

(참고) 「공인전문인증제도」 개요

- ▶ (배경) 노동부의 외형적인 인력·조직 확장을 넘어 국민과 동료가 인정·신뢰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지원하는 체계 마련
- ▶ (인증 분야) ① 노동, ② 산업안전보건(산재예방), ③ 고용서비스
- ▶ (등급 구분) 전문 1급과 2급 | 직원의 자율 신청·추천
- ▶ (인증 대상) 인증 분야의 경력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한 직원
- ▶ (평가 기준) 현장 대응·창의력, 업무 실적·우수사례, 책임성 등 심사

- (교육·인사 연계) 공인전문 인증 후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 부서장 선발 우대 등 교육·인사 제도와 연계 추진
  - 전문성을 인증받은 감독관을 신규자 등의 멘토와 전문교수로 활용하는 등 대내외 활동 지원
    - \* ▲ 신규자·지방정부 감독관 멘토, ▲ 전문교수, ▲ 외부 강의, ▲ 세미나·학회 활동 등

< (예시) 근로감독관 경력 경로 >

|                               |                                                                  |  |                                             |  |    |
|-------------------------------|------------------------------------------------------------------|--|---------------------------------------------|--|----|
| 신규<br><br>*고용노동직<br>류<br>기술직군 | <div>&lt;근로감독관&gt;<br/>(노동) 사건↔감독↔노사상생<br/>(산안) 감독↔중대재해 수사</div> |  | <div>&lt;5급 이상&gt;<br/>전문 부서장→기관장→고공단</div> |  | 퇴직 |
|                               | 전문자격(노무사, 기술사 등), 석·박사 학위 취득                                     |  |                                             |  |    |
|                               | 공인전문인증 2급                                                        |  | 공인전문인증 1급(평생 보유)                            |  |    |
|                               |                                                                  |  |                                             |  |    |

② “더 믿음직하게”감독 역량 강화에 집중

1. [신규자] 즉시 실무 투입 가능할 정도의 ‘현장형 기본역량’ 확보

- 신규 감독관 성장을 위한 현장 중심 체험·실습형 교육혁신
  - (교육 주체) 역량 높은 현직자를 가칭교육감독관으로 선발, 교육 기획·품질관리 수행 → 강의·교재개발·실습운영 전담
  - (교육 방식) 수사학교 과정 신설·확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처리’ 해보는 체험·실습형 학습으로 개편
    - \* ▲현업에 즉시 필요한 내용(실제 사건비중 반영)을 참여형 실습으로 구성,
      - ▲감독관으로서 태도·가치관 등을 내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인식·사명감 제고
    - 산업안전의 경우 수사 및 실제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등 체험·실습 강화, 중대와 배치 시 추가 수사교육(2주)으로 중처법 수사역량 배양
      - \* 집합교육 8주: 법령입문(1주) → 감독학교(4주) → 수사학교(2주) → 감독·수사보수학교(1주)
    - 신고·감독 유형별 케이스스터디 과정 신설(사건처리·롤플레이), 현업에 즉시 적용가능한 내용 반복학습 및 배치 후 현장멘토링까지 연결
  - (교육 시스템) 업무매뉴얼·체크리스트 개발·배포(감독항목·절차·조치기준 등 일원화), 표준교재 개발 등 현장멘토링 관리·지원

⇒ 신규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 교육과정 개발\*(現 직무교육 10~12주)+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지방정부 교육 등 수요 폭증에 대비  
 \* ▲[국내] 경찰 10~12개월/소방 6개월, ▲[해외] 일본 1년/독일 최대 3년

- 지방정부 근로감독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 감독관 역량강화 지원
  - (맞춤형 교육) 신규 과정을 지방위임 범위·입직경로(신규·경력·전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 중앙이 일괄로 순차 교육 실시
    - \* 지방정부에 노동직류 50% 배정, 경력채용(노무사 등), 특사경 등 배치 권고

- (신속 적응 지원) 중앙감독관 배치 및 지방노동관서의 멘토링을 통해 지방감독관의 현장 적응 및 사건처리 학습 지원

## 2. [재직자] ‘노동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력·교육체계 구축

### □ 감독관 성장경로 및 경력단계별 역량모델(KSA Model) 구축

- (경력별 모델) ‘노동 - 산안, 사건처리 → 감독·수사 → 기획·운영’을 아우르는 성장 경로 + 각 단계별 필요 교육·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예〉 노동분야 KSA [K] 법령·판례·기술적 지식, [S] 사건처리, 사업장 지도·감독, 노사분쟁 조정, [A] 공정성·대민응대·윤리·판단력

| 단계            | ❶ 신고사건 담당자            | ❷ 감독·기획수사 담당자          | ❸ 지역 노동행정 기획자         | ❹ 팀·과장                |
|---------------|-----------------------|------------------------|-----------------------|-----------------------|
| 역할<br>(Role)  | 사실확정·법리<br>검토·시정지도    | 정기·수시 감독,<br>수사절차 심화   | 지역 내 노동문제<br>분석·계획 수립 | 조직·인력 운영,<br>현장 컨트롤타워 |
| 요구역량<br>(KSA) | 노동법 기본, 사건<br>조사·면담기술 | 노동법 심화, 쟁점<br>판단, 갈등관리 | 정책기획·데이터<br>분석·조정 능력  | 리더십·조직<br>관리·위기대응     |
| 교육·배치<br>방식   | 신규자 기본교육              | 감독·수사 심화<br>교육 → 업무배치  | 고급교육 →<br>기획·조정 보직    | 관리자 교육 →<br>현장 멘토     |

### □ 수사역량 등 분야별 전문트랙(Professional Track) 마련

- (전문교육) 경력별(업무전환-저연차-고경력자)·분야별로 경력경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뒷받침하는 경력자 전문교육 대폭 확충
- (수사교육) 감독에 특화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기관과 협업한 온·오프라인 과정 맞춤형 개발
- (종합인재) 경력·역량 갖춘 노동↔산안 전환자를 양성, 노동-산안 통합 감독 및 지역 내 감독체계 운영을 이끌도록 배치·업무부여

< 노동분야 전문Track 교육체계 (예시) >

|          |                                                                            |
|----------|----------------------------------------------------------------------------|
| 개별<br>직무 | ▶ 사건 전문트랙: 임금·근로시간·해고·괴롭힘 등 유형별 심화<br>▶ 감독트랙: 정기·수사·특별감독 실습, 체크리스트·조치기준 활용 |
| 교차<br>직무 | ▶ 수사전문트랙: 압수수색, 조서작성, 형사쟁점 판단 등<br>▶ 노사관계·기획트랙: 지역 노동문제, 노동↔산안 통합감독 분석·기획  |
| 관리자      | ▶ 팀장·과장 대상 리더십·조직관리 및 학습 주도 교육                                             |

□ 개인성장 지원 및 ‘인정-보상’ 체계 구축

- (인사연계) 전문성을 조직 내 위상과 보상으로 연결 → 전문트랙 수료 시 보직 우선 배치, 평가 가점, 상위 보직 부여
- (자격 등) 감독관 직무를 ‘기회·성장’으로 인식하도록 노동전문 학위 취득, 인증전문교육, 자격증 취득(노무사·산업안전분야 기사) 등 지원
- (학습시간) 감독관 누구나 주기적인 ‘교육 사바티컬(sabbatical)’ 보장, 해당 기간 업무 제외 등 제도안착 지원(年 5일 → 단계적 확대)

### 3. [조직] 지역 현장 학습-확산, 상시 학습조직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빠르게 순환되는 상시·주기적·집단 학습구조 구축

- (학습구조) “팀 신속·핵심 학습 → 청·지청 학습모임 → 본부 환류”의 상시 학습 사이클을 지방관서 운영 표준으로 정착
  - 관서별 “주간 조직학습 시간” 의무 지정하여 공동학습 정례화, 부서장이 부서원 수요에 따라 교육 구성 + 본부는 강사·교재 지원
  - \* 조직학습 실적을 기관 및 기관장·부서장 평가에 반영(가·감점)

| 단계       | ① 팀 단위 신속학습                                       | ② 지청 단위 학습모임                               | ③ 본부 환류·확산                        |
|----------|---------------------------------------------------|--------------------------------------------|-----------------------------------|
| 주요<br>내용 | ▶ “금주의 핵심 사건” 선정<br>▶ 쟁점·해결과정 등을<br>‘3분 학습노트’로 요약 | ▶ 주제별 커뮤니티 운영 →<br>학습노트 기반, 사례·쟁점<br>토론·공유 | ▶ 분기별 결과 수집·취합<br>▶ 유형별 사례집 제작·배포 |
| 단위       | 1주                                                | 1개월                                        | 분기                                |

□ 팀장의 학습 리더십 강화 및 학습 전문가 양성, 교육 인센티브 확보

- (팀장 중심) 팀(과)장이 조직학습·업무관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확충하고,

권한을 강화하면서 포상 등 함께 지원\*

\* 인사·평가 권한(의견제시권, 교육 추천권 등)+학습운영비·우수관서 포상 등 지원

- (강사 확보) 권역별 강사풀 구성을 의무화하고, 학습리더 및 사내강사에 대해 전문성에 따라 보상·경력 기회 확대

\* (예) 사내 강사 → 교육전담감독관(지방·본부) → 공인전문인증 감독관 → 감독부서장

↳ 평가·보직 가점 부여, 관리자 보직 우선 추천 등

### 3 감독업무 몰입을 위해“더 따뜻하게”사기양양

- 감독·수사 우수 감독관 대상 파격적으로 포상금 지급

- (개인 포상) 감독관이 임금체불 청산, 사업장 감독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특별 성과 포상금 지급
- (부서·팀 지원) 팀(부서)에서 협업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팀원 전체에 개별적으로 포상금 지급 추진 검토

📁 공직 활성화 방안(‘25.11.10, 대통령실)

-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 지급

- 근로감독관 보호 체계 제도화

- (특이민원)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보호·지원하는 규정\* 명문화

\* ①감독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금지, ②직무 수행으로 인한 소송 시 비용지원, ③반복민원에 따른 피해에 대한 예방, 치료 지원 등

-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 등이 폭언·폭행 등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거나 녹음·녹화 등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유사사례: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 열차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필요 시 금지행위의 제지, 녹음·녹화 또는 촬영 가능하도록 규정

- (반복사건) 동일 내용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규정\* 마련 방안 검토

\*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종결 등

- (재해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감독관 포함 추진 → 적극적 현장 업무수행 지원, 사고 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고용보험수사관(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51호)만 포함

## 3

## 공정한 감독행정을 위한 인프라 혁신

## ① “더 새롭게” 감독관 신뢰도 제고

## □ 감독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브랜딩화

- (명칭 변경) 급변하는 노동환경 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및 노동권 보호 역할을 하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브랜딩화) 국민들이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공감하도록 “일터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현장의 노동감독관” 브랜딩화

📁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 대국민·내부·관계자 대상 공모(9.4~25, 9,898명 참여) → 전문가 자문회의(9.23) → 소규모 기업 종사자 간담회(11.3) → 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서면자문(11.17~20) →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 미팅(11.25) → 명칭변경 심의·결정위 결정(11.27)

## □ 감독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

-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민간기업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 시 ‘취업 심사’를 실시하여 이해충돌 방지 추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 \*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 등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 사적 접촉 신고 대상기준방법 등 구체화 → 홍보·교육·이행상황 모니터링, 사적 접촉 후 부정비위 발생 시 ①즉시 업무배제하고 ②징계 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근로감독관 대상 특화된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자에 대한 청렴·직무교육 강화

## □ 감독 행정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만족도 조사) 감독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감독 종료 후 감독 사업장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 (평가 항목) 감독 과정의 공정성, 감독 후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 (결과 활용) 조사 결과 공개 및 감독행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② “더 만족스럽게” 통일적·체계적 감독을 위한 기반 구축

### □ 근로감독의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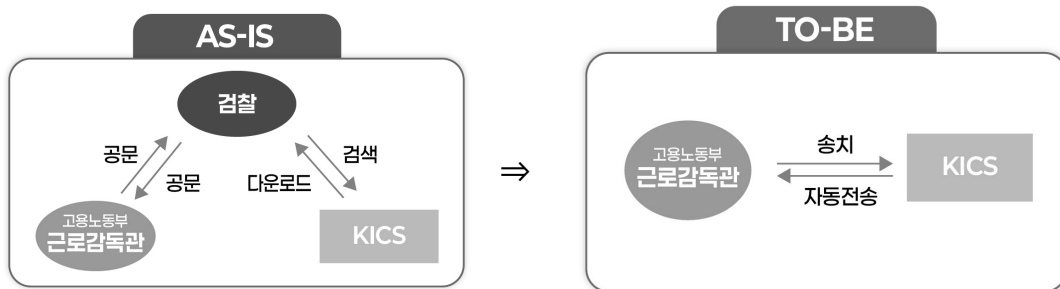
-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위해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70여년 만에 일반법으로써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추진
  -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발의(의원 입법)
- 특별사법경찰관 중 유일하게 감독관 권한·의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거와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 배분 등 종합 규율

### □ 근로감독 연례 보고서 발간 및 감독 사례 확산

- (연례보고서) 보다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해 매년 실시한 감독 종류, 규모,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한 ‘근로감독 연례 보고서’ 발간 추진
- (사례 확산) 현장에서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감독 사례 포함·적극 확산

### □ 감독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 강화

- (시스템 연계) 감독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상시적으로 제공받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대검찰청)과 노사누리(노동부) 연계 추진
  - \* 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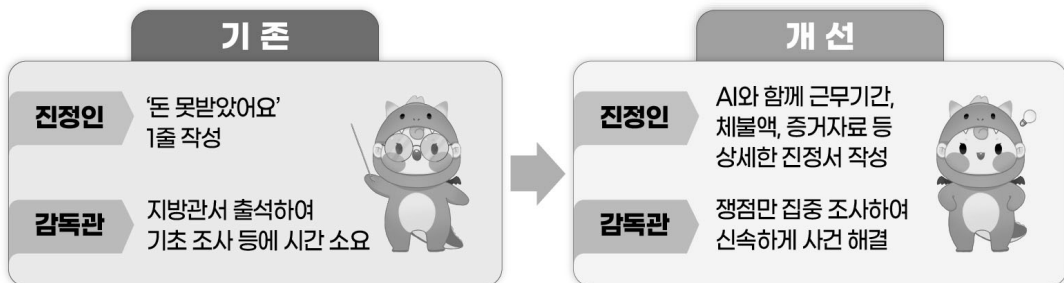


- (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감독 하면서 필요한 지원 연계

\* 개별 기업의 피보험자 수, 임금, 지원금 수급 여부 등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

### ③ “더 효율적으로” 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

- AI·데이터 기반 감독으로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보호 실현
  - (감독 핸드북) 신규 감독관도 베테랑처럼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별 착안사항 확인, 증거 기록 등을 돕는 ‘근로감독 핸드북’ 앱 개발·운영
    - \* 노동부 자체 개발 및 2개 시범지청 테스트 중(’25.11월~) → 쏘 지방관서 확산(’26년~)
  - (AI 비서) 행정망 內 생성형 AI로 사업장 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AI 비서’ 운영
    - \* 노동부 쏘 직원 보급 완료(’25.11.) → 업무상황별 유용한 AI 프롬프트(명령어) 제작·공유,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등 자료 대화형 검색 기능 추가(’26년~)
- AI가 임금 체불 등 노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 지원
  - (24시간 지원) 24시간 34개 언어로 국민의 질문에 맞춤형 답변 제공
    - \*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상담 제공(<https://ai.moel.go.kr>) → 상담 범위 확대(’26년~)
  - (진정서 작성) 임금 체불 등 피해 노동자가 사건 접수 시 AI를 활용하여 충실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



- AI가 사업주의 간편한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여 노동권 침해 예방
  - (노동법AI) 사업주 등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을 입력하여 기초 노동법 준수 여부를 쉽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AI 개발
  - (산업안전AI)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위험요소, 개선 필요사항, 관련 사고사례 등을 한 번에 제시하는 ‘산재 위험요소 자율점검 AI’ 개발
    - \* 과기부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한 실증(’25.10~’26.12월) → 정밀도 지속 개선(’27년~)

##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① (기대 효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노동부’ 실현

- (노동자)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주) 노동관계법 준수를 일상화하여 ‘몰라서 처벌받는’ 등 경영 리스크 완화, 준법 사업주는 보호하면서도 법 위반 시 엄단 원칙 확립
- (감독관)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고, 노동자·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감독행정 구현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사회 구현

### ② (향후 계획) 차질 없는 과제 추진으로 ‘감독행정 혁신 현장 안착’

- (입법) 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지속 지원
  -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25.11.5 발의)
  -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사항은 국회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
- (예산)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 (이행 점검) 지속적인 감독행정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 혁신 협의체」 운영, 근로 감독관 현장 간담회 등 소통 노력
  - 현장 의견 수렴 및 지속 논의를 통해 실질적 현장 안착 지원
  - ☞ 범부처 근로감독 행정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중앙·지방정부 등 감독행정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행력 확보

|    |          |
|----|----------|
| 붙임 | 향후 추진 일정 |
|----|----------|

|       |    |    |
|-------|----|----|
| 추진 과제 | 소관 | 일정 |
|-------|----|----|

|                                     |
|-------------------------------------|
| Ⅰ. 현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감독 행정」 확립 |
|-------------------------------------|

|                |
|----------------|
| 1.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 |
|----------------|

|                                     |          |        |
|-------------------------------------|----------|--------|
| ①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부터 중점 감독             |          |        |
| ① 사업장 감독물량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감독·산안    | ‘26.~  |
| ② 통합 데이터 기반 AI로 감독 대상 선정            | 감독·산안·노동 | ‘26.下~ |
| ③ 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 및 기초안전수칙 점검          | 감독·산안    | ‘26.~  |
| ④ 가짜 3.3, 외국인, 작은 사업장 등 취약계층·사업장 보호 | 감독·산안    | ‘26.~  |
| ⑤ 안전일터 신고센터, 재직자 익명제보 상시화           | 감독·산안    | ‘26.~  |

|                                   |       |       |
|-----------------------------------|-------|-------|
| ② 법 위반 발생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한 감독 실시    |       |       |
| 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 감독·산안 | ‘26.~ |
| ② 기획·특별감독 착수 즉시 검토 및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 감독·산안 | ‘26.~ |
| ③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즉시 제재           | 산안    | ‘26.~ |

|                                 |    |       |
|---------------------------------|----|-------|
| ③ 감독 기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관리 강화       |    |       |
| ① 체불 전수조사 후 신고사건 다시 제기 시 재감독 실시 | 감독 | ‘26.~ |
| ② 고위험 사업장에 추가 감독하여 개선 이행 여부 확인  | 산안 | ‘26.~ |

|                                  |                |        |
|----------------------------------|----------------|--------|
| ④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한 감독 품질 제고          |                |        |
| ① 지역 단위 전담제 실시, 필요시 고위험 사업장 관리   | 감독·산안          | ‘26.~  |
| ②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 현장 정착              | 감독·산안          | ‘26.~  |
| ③ 팀장에 중요사건 검토권, 근평 의견 등 권한 부여 검토 | 감독·산안<br>운영지원과 | ‘26.~  |
| ④ 올해의 감독팀 추가 선정포상                | 감독·산안          | ‘26.下~ |

|                         |
|-------------------------|
| 2. 지방위임 등으로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 |
|-------------------------|

|                              |    |        |
|------------------------------|----|--------|
| ①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    |        |
|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촘촘한 예방감독 체계 구축 | 감독 | ‘27.上~ |

| 추진 과제                         | 소관 | 일정      |
|-------------------------------|----|---------|
| ② 감독 절차내용, 조직·인력 등 운영기준 수립    | 감독 | ‘26.~   |
| ③ 감독 결과 평가 및 예산인력 인센티브 마련     | 감독 | ‘26.~   |
| ④ 지방관서와 합동점검·OJT 공동수행 등 지원·협력 | 감독 | ‘26. 下~ |

|                                |          |         |
|--------------------------------|----------|---------|
| ② 타부처 및 민간전문기관 협업 강화           |          |         |
| ① 노동법 회피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세무조사 실시   | 감독·국세청   | ‘26.~   |
| ②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합동감독 확대          | 감독·국토부   | ‘26.~   |
| ③ 민간전문기관 연계로 사업주 자율개선 지원       | 감독·산안·노정 | ‘26.~   |
| ④ 소규모 사업장용 노무관리 가이드북 마련, 감독 연계 | 감독       | ‘27. 上~ |

### 3. 감독행정 인력·조직 보강

|                             |          |       |
|-----------------------------|----------|-------|
| ①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          |       |
| ① ‘26년까지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 기획·감독·산안 | ‘26.~ |
| ②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 상향 추진 | 기획·산안    | ‘26.~ |

|                                  |          |         |
|----------------------------------|----------|---------|
| ② 본부·지방관서간 유기적 연계 확대를 위한 조직 강화   |          |         |
| ① 본부 근로감독정책단 복원, 산업안전본부 차관급 격상   | 기획·감독·산안 | ‘25. 下~ |
| ② 경기도 전속 관할청 및 지청(2개) 신설         | 기획·감독·산안 | ‘26.~   |
| ③ 감독·수사 기능 체계화 위해 지방관서 79개 부서 신설 | 기획·감독·산안 | ‘26.~   |

## II. 「노동행정 전문가」로 성장을 통한 감독의 질(質) 제고

### 1. 채용부터 경력까지 인사시스템 개편

|                              |       |       |
|------------------------------|-------|-------|
| ① 잠재적 역량 있는 인재 발굴·채용         |       |       |
| ① 7·9급 고용노동직류 선발, 산안 기술직군 확대 | 운영지원과 | ‘26.~ |
| ② 민간 및 타부처·지방정부 전입·경력채용 추진   | 운영지원과 | ‘26.~ |

|                          |       |       |
|--------------------------|-------|-------|
| ② 근로감독관 특화 보직 관리 체계 강화   |       |       |
| ①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직위군 추가     | 운영지원과 | ‘26.~ |
| ② 6급 이하 전문직 공무원 양성 경로 검토 | 운영지원과 | ‘26.~ |

| 추진 과제                  | 소관    | 일정    |
|------------------------|-------|-------|
| ③ 장기재직자 대상 순환 전보 원칙 확립 | 운영지원과 | ‘26.~ |

| ③ 유인 제고를 위한 승진·평가체계 설계          |             |       |
|---------------------------------|-------------|-------|
| ① 지방관서 팀장·부서장 등의 유인구조 및 평가체계 설계 | 운영지원과       | ‘26.~ |
| ② 올해의 감독팀 대상 5급 특별승진 가점 추진      | 운영지원과<br>감독 | ‘26.~ |

| ④ 공인전문인증제 신설 및 인사교육 연계         |    |       |
|--------------------------------|----|-------|
| ①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 신설 | 기획 | ‘26.~ |
| ② 공인전문인증 후 교육·인사제도와 연계 추진      | 기획 | ‘26.~ |

## 2. 감독 역량 강화에 집중

| ① (신규자) 즉시 실무 투입 가능할 정도의 '현장형 기본역량' 확보 |       |         |
|----------------------------------------|-------|---------|
| ① 역량 높은 현직자를 교육감독관 선발, 교육기획 등          | 감독·산안 | ‘26.~   |
| ② 수사학교과정 신설·확대 및 체험·실습형 학습으로 개편        | 감독·산안 | ‘26.~   |
| ③ 업무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멘토링 관리지원 등            | 감독    | ‘26.~   |
| ④ 장기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             | 감독·산안 | ‘26.~   |
| ⑤ 지방정부감독관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감독·산안 | ‘26. 下~ |

| ② (재직자) '노동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력·교육체계 구축 |                |         |
|-------------------------------------|----------------|---------|
| ① 감독관 성장경로 및 경력단계별 역량모델 구축          | 감독·산안          | ‘26.~   |
| ② 경력별·분야별 경력자 전문교육 확충               | 감독·산안          | ‘26.~   |
| ③ 수사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사교육 과정 맞춤형 개발       | 감독·산안          | ‘26.~   |
| ④ 경력·역량을 갖춘 노동·산안 전환자 양성            | 감독·산안          | ‘26.~   |
| ⑤ 전문트랙 수료 시 보직 우선 배치 등 인사 연계        | 운영지원과<br>감독·산안 | ‘26.~   |
| ⑥ 노동전문학위 취득, 인증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등 지원    | 운영지원과<br>감독·산안 | ‘26.~   |
| ⑦ 교육 사바티컬(sabbatical) 보장 및 제도안착 지원  | 운영지원과<br>감독·산안 | ‘27. 上~ |

| ③ 지역 현장 학습·확산, 상시 학습조직 체계 구축     |       |       |
|----------------------------------|-------|-------|
| ① “팀 학습·창·지칭 학습모임·본부 환류”의 사이클 정착 | 감독·산안 | ‘26.~ |
| ② 팀장 역량교육 확충 및 권한 강화, 포상 등 지원    | 감독·산안 | ‘26.~ |

| 추진 과제                         | 소관    | 일정    |
|-------------------------------|-------|-------|
| ③ 권역별 강사풀 구성 의무화 및 보상·경력기회 확대 | 감독·산안 | ‘26.~ |

### 3. 감독업무 몰입을 위해 근로감독관 사기양양

#### ① 감독·수사 우수 감독관 대상 파격적 포상금 지급

|                                |          |       |
|--------------------------------|----------|-------|
| ① 감독관이 혁신적 성과 달성 시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 기획·감독·산안 | ‘26.~ |
| ② 팀 협업에 따른 성과에는 팀원 전체 지급 추진 검토 | 기획·감독·산안 | ‘26.~ |

#### ② 근로감독관 보호 체계 제도화

|                                  |        |       |
|----------------------------------|--------|-------|
| ①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 위한 규정 명문화  | 감독·감사관 | ‘26.~ |
| ② 반복 접수되는 사건 등 종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감독·감사관 | ‘26.~ |
|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감독관 포함 | 감독     | ‘26.~ |

### III. 공정한 감독행정을 위한 인프라 혁신

#### 1. 감독관 신뢰도 제고

##### ① 감독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브랜딩화

|                                  |    |       |
|----------------------------------|----|-------|
| ① 생명·안전 및 노동권 보호하는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 감독 | ‘26.~ |
| ② 국민의 역할 인식·공감을 위해 노동감독관 브랜딩화    | 감독 | ‘26.~ |
| ③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       | 감독 | ‘26.~ |

##### ② 취업심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     |       |
|------------------------------|-----|-------|
| ①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방안 추진 | 감사관 | ‘26.~ |
| ② 감독 종료 후 사업장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감독  | ‘26.~ |
| ③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감독  | ‘26.~ |

#### 2. 통일적·체계적 감독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근로감독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연례보고서 발간 등

|                                  |       |         |
|----------------------------------|-------|---------|
| ① 통일적 규율을 위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추진 | 감독    | ‘26.~   |
| ② 매년 감독 종류, 결과 등 종합한 연례보고서 발간    | 감독·산안 | ‘26. 下~ |
| ③ 자율적 개선 위한 주요 감독 사례 포함·적극 확산    | 감독·산안 | ‘26. 下~ |

| 추진 과제                         | 소관    | 일정     |
|-------------------------------|-------|--------|
| ② 감독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 강화   |       |        |
| 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과 노사누리 연계 추진      | 감독    | ‘27.上~ |
| ② 디지털 기업지도 활용한 사업장 감독 및 지원 연계 | 감독·지원 | ‘26.~  |

### 3. 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

|                                      |    |       |
|--------------------------------------|----|-------|
| ① AI-데이터 기반 감독으로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보호 실현   |    |       |
| ① 점검항목 등 지원하는 ‘근로감독 핸드북’앱 개발·운영      | 노동 | ‘26.~ |
| ② 보고서 작성 등 효율적 처리 위한 ‘근로감독 AI 비서’ 운영 | 노동 | ‘26.~ |

|                                |    |       |
|--------------------------------|----|-------|
| ② AI가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 지원   |    |       |
| ① 24시간 34개 언어로 국민의 질문에 맞춤형 답변  | 노동 | ‘26.~ |
| ② 체불 등 피해 노동자의 진정서 작성 지원 AI 개발 | 노동 | ‘26.~ |

|                                   |    |       |
|-----------------------------------|----|-------|
| ③ 사업주의 간편한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여 노동권 침해 예방 |    |       |
| ① 기초 노동법 준수 여부 자가 점검 AI 개발        | 노동 | ‘26.~ |
| ② 위험요소, 개선사항 등 산재 위험요소 자율점검 AI 개발 | 노동 | ‘26.~ |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 통 화 명           | 1월 2일(금) | 1월 5일(월) | 1월 6일(화) | 1월 7일(수) | 1월 8일(목) |
|-----------------|----------|----------|----------|----------|----------|
| 미 달 러 (USD)     | 1434.90  | 1442.10  | 1446.80  | 1445.70  | 1448.30  |
| 위 안 화 (CNH)     | 204.76   | 206.92   | 207.52   | 207.26   | 207.47   |
| 일 본 엔 (JPY)     | 915.06   | 919.79   | 924.21   | 923.06   | 924.46   |
| 유 로 화 (EUR)     | 1685.72  | 1688.99  | 1695.50  | 1689.95  | 1691.18  |
| 영 국 파 운 드 (GBP) | 1933.31  | 1940.20  | 1958.61  | 1951.98  | 1949.19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45.73  | 1049.53  | 1050.61  | 1046.62  | 1044.95  |
| 홍 콩 달 러 (HKD)   | 184.31   | 185.09   | 185.84   | 185.64   | 185.99   |

| 통 화 명           | 1월 9일(금) | 1월 12일(월) | 1월 13일(화) | 1월 14일(수) | 1월 15일(목) |
|-----------------|----------|-----------|-----------|-----------|-----------|
| 미 달 러 (USD)     | 1449.40  | 1455.70   | 1464.10   | 1472.80   | 1477.50   |
| 위 안 화 (CNH)     | 207.26   | 208.44    | 210.64    | 211.25    | 211.83    |
| 일 본 엔 (JPY)     | 923.89   | 921.01    | 925.62    | 925.33    | 933.47    |
| 유 로 화 (EUR)     | 1690.00  | 1693.42   | 1708.09   | 1715.00   | 1720.62   |
| 영 국 파 운 드 (GBP) | 1947.63  | 1950.57   | 1971.26   | 1977.23   | 1985.98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45.52  | 1046.36   | 1055.13   | 1060.56   | 1064.44   |
| 홍 콩 달 러 (HKD)   | 186.02   | 186.74    | 187.81    | 188.81    | 189.49    |

| 통 화 명           | 1월 16일(금) | 1월 19일(월) | 1월 20일(화) | 1월 21일(수) | 1월 22일(목) |
|-----------------|-----------|-----------|-----------|-----------|-----------|
| 미 달 러 (USD)     | 1469.70   | 1473.50   | 1473.60   | 1477.00   | 1472.80   |
| 위 안 화 (CNH)     | 211.18    | 211.63    | 211.87    | 212.48    | 211.43    |
| 일 본 엔 (JPY)     | 926.52    | 934.58    | 931.74    | 934.01    | 930.41    |
| 유 로 화 (EUR)     | 1706.10   | 1709.55   | 1715.79   | 1731.71   | 1720.89   |
| 영 국 파 운 드 (GBP) | 1966.46   | 1971.40   | 1977.79   | 1985.46   | 1977.90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58.21   | 1059.16   | 1062.40   | 1067.31   | 1064.58   |
| 홍 콩 달 러 (HKD)   | 188.48    | 188.96    | 189.00    | 189.38    | 188.89    |

| 통 화 명           | 1월 23일(금) | 1월 26일(월) | 1월 27일(화) | 1월 28일(수) | 1월 29일(목) | 1월 30일(금) |
|-----------------|-----------|-----------|-----------|-----------|-----------|-----------|
| 미 달 러 (USD)     | 1468.40   | 1467.20   | 1442.80   | 1448.80   | 1428.60   | 1427.00   |
| 위 안 화 (CNH)     | 211.26    | 210.93    | 207.21    | 208.18    | 205.78    | 205.46    |
| 일 본 엔 (JPY)     | 927.02    | 948.88    | 935.70    | 950.81    | 931.32    | 932.89    |
| 유 로 화 (EUR)     | 1726.62   | 1744.06   | 1713.90   | 1743.05   | 1707.75   | 1708.33   |
| 영 국 파 운 드 (GBP) | 1983.44   | 2007.06   | 1973.53   | 2004.27   | 1971.83   | 1970.62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65.29   | 1071.46   | 1052.29   | 1066.20   | 1053.27   | 1057.94   |
| 홍 콩 달 러 (HKD)   | 188.34    | 188.19    | 185.04    | 185.76    | 183.11    | 182.81    |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z.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